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403-14

United States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미국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사 ▶▶▶

2015년 12월 중국,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한-미 FTA를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까지 한국의 3대 수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후 이들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매년 확대되어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준의 약 50%에 근접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FTA 활용정보와 수출을 위한 핵심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 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미국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한-미국 FTA 활용현황 분석 및 한-미 FTA 사후검증(직접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국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통상·통관 이슈를 업데이트하였으며, 대미 수출 시 필요한 품목별 인증제도, 마지막으로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현황 및 진출 가이드라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한-미국 FTA 활용을 위한 핵심정보 제공과 변화하는 통관제도 및 통상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관세청은 기업들의 FTA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12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 태 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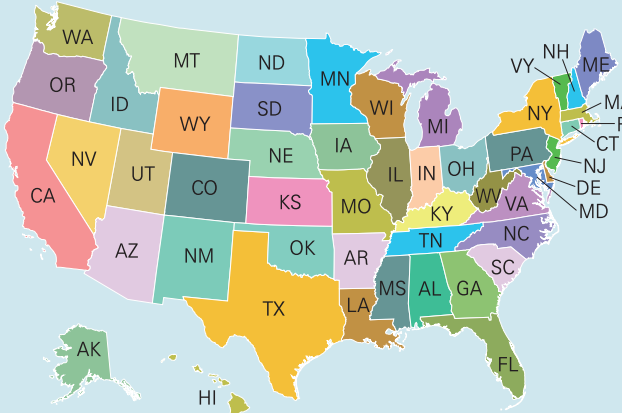


Contents

발간사	1
미국 개황	4
1. 미국 주요 경제지표	4
2. 미국 FTA 체결현황	5
3. 미국 통관·통상환경	5
한-미국 FTA의 개관	6
1. 추진경과	6
2. 체결 의의	6
3. 최근 주요 한-미 FTA 및 통상 이슈	7
4. 한-미국 FTA 협정문 구성	8
한-미국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8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1

제 I 장 한-미국 FTA 활용 및 사후검증	14
제1절 한-미국 FTA 발효 6년차 활용현황	15
제2절 한-미국 FTA 개정협상	17
제3절 한-미국 FTA 직접검증	21
제 II 장 미국의 통관 법제도	28
제1절 통관 조직 및 절차	29
제2절 최근 통관환경 이슈	48
제3절 주요 인증제도	63
제 III 장 미국의 통상 법제도	78
제1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79
제2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94
제 IV 장 미국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98
제1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99
제2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111
제3절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114
제4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121

미국 개황



- **국가명** 미합중국(수도 워싱턴 D.C.)
- **행정구역** 50개 주(State), 1개 특별구(Federal District) (면적 937만km²)
- **인구** 3억 2,819만 명
[백인(76.9%), 흑인(13.3%), 아시아인 (5.7%), 별도로 히스패닉 인구만 산정 시 17.8%, 2018.7월 기준]
- **공용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 통용)
- **기후** 다양한 기후, 대체로 온대기후
남부 : 아열대, 북부 : 한대, 하와이 : 열대
-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이슬람(0.9%), 불교(0.7%)
- **정치**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1. 미국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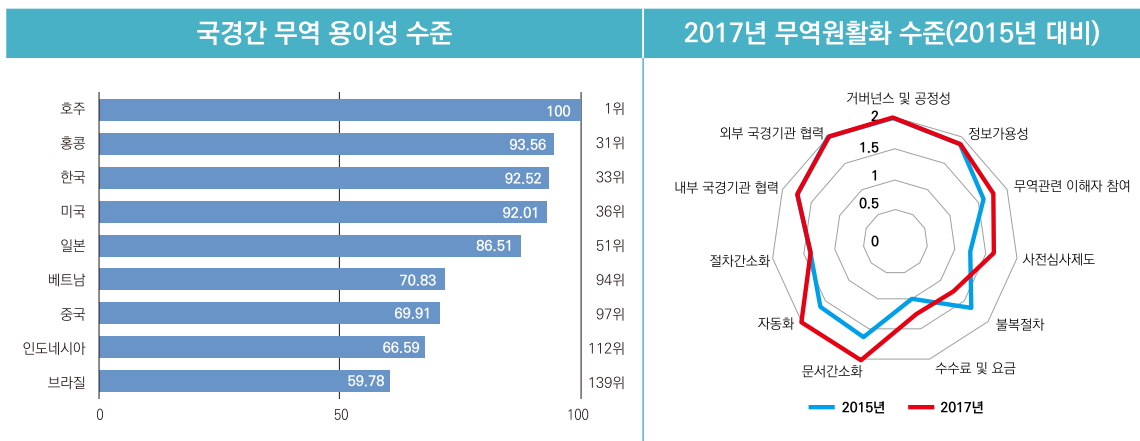
주요지표	2017	2018f	2019f	2020f
GDP(십억 달러)	19,485.4	20,513	21,482.41	22,289.31
GDP 성장률(%)	2.2	2.9	2.5	1.8
1인당 GDP(달러)	59,792.0	62,517.5	65,061.6	67,08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4	2.1	2.3
상품 및 서비스수출*(%)	3.02	3.32	0.86	2.86
상품 및 서비스수입**(%)	4.56	4.5	5.67	3.37
실업률(%)	4.4	3.8	3.5	3.4

주 : f(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총 수출에서 상품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총 수입에서 상품 서비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미국 FTA 체결현황

체결 및 발효 (14건)	다자간	NAFTA ¹⁾ , DR-CAFTA ²⁾
	양자간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페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협상 중(8건)	다자간	SACU ³⁾ , CAN ⁴⁾ , FTAA ⁵⁾ , (협상중단) TTIP ⁶⁾
	양자간	에콰도르, UAE, 말레이시아, 태국
검토 중(1건)	다자간	FTAAP ⁷⁾

3. 미국 통관·통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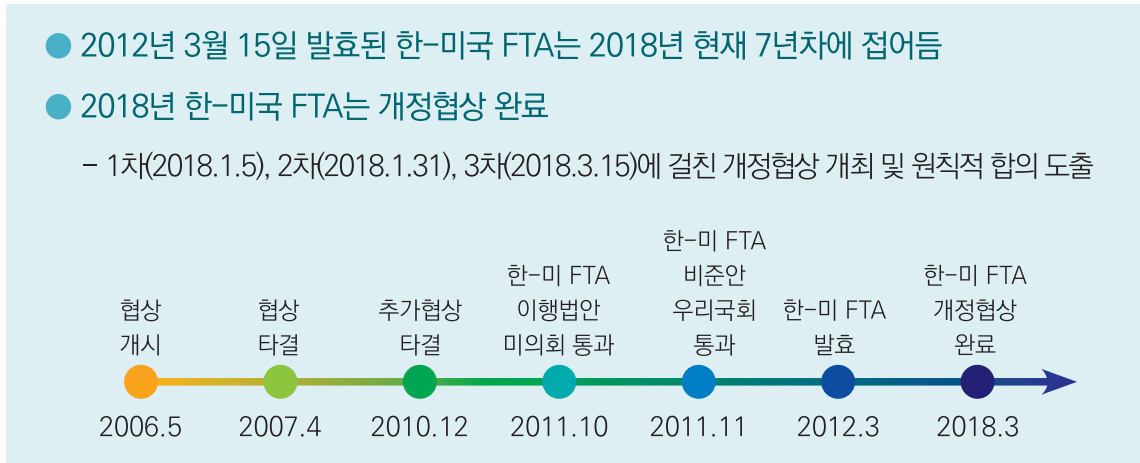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 OECD Trade Facilitation(2018년 10월 기준)

-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2) DR-CAFTA(중앙아메리카-도미니카공화국 FTA :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3)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4) CAN(안데안공동체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5)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 쿠바 제외 북미·중남미 34개국)
- 6)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미국, EU)
- 7)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APEC 회원국)

한-미국 FTA의 개관

1. 추진경과



2. 체결의의

- 경제적 요인
 - 전세계 최대 시장 안정적 확보 : 관세 등 거래 비용 감소, 통상마찰 완화
 -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생산·고용·교역의 증대 : 미국시장 선점, 기업환경 개선, 산업효율성 증대
 - 우리나라민의 삶의 질 향상 : 저렴한 가격,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 후생증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국은 전세계 상품의 각축장,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진원지
- 제도적 요인
 -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계기 :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 개선
 - 신기술 확보 : 미국은 세계 최고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 지정학적 요인
 - 안보 리스크 완화, 대외 신인도 제고 : 외국인투자 증대

3. 최근 주요 한-미 FTA 및 통상 이슈

- 우리기업은 美 트럼프정권 출범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규제조치 및 수입규제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 (철강·자동차·전자제품 등)
- 2018년 한-미국 FTA 개정협상으로 섬유원산지기준 완화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주요 이슈		내용
한-미국 FTA	한-미국 FTA 개정협상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원산지기준: 일부품목의 경우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 인정 • 원산지검증: 신속한 원산지검증 진행에 합의(검증 개시후 12개월 이내 종료), 정보요청에서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명확한 지침 제공 노력 • 한-미간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⁹⁾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여 정부의 정책권한 보호 → 중복제소방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해 추가 소송 불가) • 미국의 대한국 기업 수입규제 조사 시 반덤핑·상계관세 계산방식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수입규제조치	무역확장법 2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주요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 최근에는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무역규제조치 ¹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제조기업이 수출기업에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 가능 • 2017년 한국기업에 대해 AFA 조항을 적용한 고율의 덤핑마진 사례 발생
	특별시장상황 (PMS; Particular Market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조사당국의 방식으로 제조원가를 산정 가능 • 한국산 열연코일의 구매가격에 PMS를 적용해 덤핑 마진을 높게 산정한 사례 발생
	美상무부 직권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제소 없이 상무부는 자체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가능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세탁기·태양광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IEP 자료 재구성

8) 구체적 내용 p.17, p90 참고 9) 구체적 내용 p.17, p18 참고 10) 구체적 내용 p.81, p84 참고

4. 한-미국 FTA 협정문 구성

구분	챕터
상품	상품(제2장), 농업(제3장), 섬유(제4장), 의약품(제5장), 원산지(제6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제9장), 무역구제(제10장)
서비스·투자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공급(제12장), 금융서비스(제13장), 통신(제14장)
규범·협력	전자상거래(제15장), 경쟁(제16장), 정부조달(제17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투명성(제21장), 분쟁해결(제22장)
최종규정	최종규정 및 일반적 정의(제1장), 예외(제23장), 최종규정(제24장)

주 : 협정문 내용은 한-미FTA 협정포털 참고(<http://fta.go.kr/us/doc/1/>)

한-미국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미국 FTA 활용 단계별로 이해하기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미국)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분류 상이사례 (예시)〉

물품	한국	미국
플라스틱 성형기기	3920.10	3921.90
신발	6403.19	6403.99
연마용조제품	3405.40	3405.90
신발부자재	5903.20	5903.90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총치병, 싱글다이 등의 치과용 물품들의 표면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3차원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9018.49	9031.49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미국 FTA 활용 단계별 순서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본용어 쉽게 이해하기

1.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 판단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 충족을 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일반적으로 HS코드 6단위별로 그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다.

2.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이 정하는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광산물에 주로 적용된다.

3.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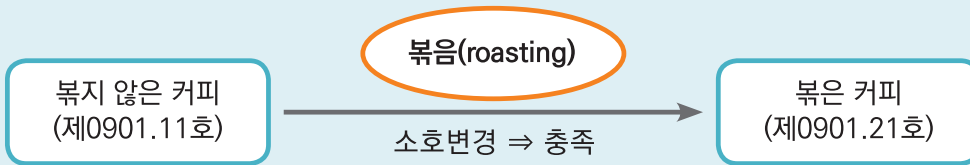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될 때,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류, Chapter)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호, 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투입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소호, Sub-heading)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사례 〉

- 볶은 커피(제0901.21호) :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역외산 제0901.11호의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제0901.21호의 볶은 커피를 생산한 경우, 6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4.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해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계산방법에는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집적법(BU, Build-up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등이 있다.

〈 공제법(BD, Build-down Method) 사례 〉

- 가정용 믹서기(제8509.40호) :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완제품 FOB 가격	₩35,000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RVC40) 선택
------------	---------	---------	------------------

〈원재료 명세 및 가격구성표〉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1	모터 ASS'Y	8501.10	₩15,000	1 EA	₩15,000	일본(역외산)
2	본체 케이스	8509.90	₩3,000	1 EA	₩3,000	한국

NO.	재료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가격	원산지
3	PCB	8534.00	₩300	2 EA	₩600	미국(역외산)
4	커터	8208.30	₩200	1 EA	₩200	일본(역외산)
5	컵 ASS'Y	8509.90	₩7,000	1 EA	₩7,000	한국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공제법)} = \frac{\text{본선인도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text{본선인도가격}} \times 100$$

$$\text{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 \frac{35,000 - 15,800(15,000+600+200)}{35,000} \times 100 = 54.86\%$$

본선인도가격(FOB)은 ₩35,000, 비원산지재료비는 ₩15,800으로 부가가치비율 계산결과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54.86%)가 발생했으므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5. 가공공정기준 (SP, 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협정에서 규정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이고 주로 섬유류나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에 채택되어 있다.

6. 선택기준 및 조합기준

선택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며 조합 기준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제 I 장

한-미국 FTA 활용 및 사후검증

제1절 한-미국 FTA 발효 6년차 활용현황

제2절 한-미국 FTA 개정협상

제3절 한-미국 FTA 직접검증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미국편)



제1절 한-미국 FTA 발효 6년차 활용현황

한-미 FTA발효 후 대미국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대미국 교역량	1,008 (11.7)	1,019 (1.1)	1,036 (1.7)	1,156 (11.6)	1,139 (△1.5)	1,097 (△3.7)	1,193 (8.8)	954
대미국 수출액	562 (12.8)	585 (4.1)	621 (6.0)	703 (13.3)	698 (△0.6)	665 (△4.8)	686 (3.2)	524 (0.5)
대미국 수입액	446 (10.3)	443 (△2.8)	415 (△4.2)	453 (9.1)	440 (△2.8)	432 (△1.8)	507 (17.4)	430 (20.5)
대세계 교역량	10,796 (21.1)	10,675 (△1.1)	10,752 (0.2)	10,982 (2.1)	9,633 (△12.3)	9,016 (△6.4)	10,522 (16.7)	8,460 (△19.6)
대미국 교역비중	9.3%	9.5%	9.6%	10.5%	11.8%	12.2%	11.3%	8.9%

- 대미국 교역량 및 비중은 한-미FTA 발효이전 10%미만이었으나, 발효 이후 10%이상 증가
 - 대미국 교역비중: 2013(9.6%) → 2014(10.5%) → 2015(11.8%) → 2016(12.2%) → 2017(11.3%)
 - 대세계 교역량이 급감한 2015년, 2016년에는 대미국 교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 발효 6년차인 2017년 한-미간 교역은 1,193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증가
 - 2017년 한-미 교역액은 한국 총 교역액의 11.3%를 차지하며 한국의 제2위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1위는 중국으로 2,400억 달러, 22.8% 기록)
 - (수출) 2017년 대미 수출은 686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
 - * 주로 석유제품, 컴퓨터, 철강관 등이 수출증가를 견인
 - (수입) 2017년 대미 수입은 5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7.4% 큰 폭으로 증가
 - * 주로 반도체 제조용장비, 반도체, LPG, 승용차, 의약품, 육류 등이 수입증가를 견인

■ 2017년 한국의 한-미국 FTA 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산업분류	특혜적용 금액	특혜대상 금액	수출활용률*	수출미화 금액
기계류	20,884	21,102	90.4%	30,269
전자전기제품	2,898	3,774	76.8%	19,580
철강금속제품	1,078	1,395	77.3%	4,888
화학공업제품	1,425	1,939	73.5%	4,205
광산물	2,964	3,064	96.7%	3,37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2,321	2,715	85.5%	2,793
섬유류	811	1,120	72.4%	1,273
생활용품	434	756	57.4%	1,196
농림수산물	349	636	54.8%	913
잡제품	6	21	27.7%	191
합계	33,170	38,522	86.1%	68,681

* 수출활용률이란 (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임

● 한국의 대미국 주력수출 산업은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철강금속제품 (MTI 1단위 기준)

- 기계류 :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 전기전자제품 :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 철강금속제품 : 철강관 및 철강선 등

●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기계류, 수출활용률은 90.4%

- 광산물의 FTA 수출활용률 96.7%로 평균 수출활용률 86.1%를 상회
- 그밖에 전자전기제품, 광산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은 특혜대상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활용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함

제2절 한-미 FTA 개정협상

■ 추진경과

● 2018년 3월, 3차례의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 도출

- 우리정부는 미국정부의 개정협상 요청에 따라 한-미 FTA 개정에 필요한 국내 절차 진행을 완료
 -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협정 폐기 위협 하에 재협상을 요구해옴
 - ❖ 2017년에 우리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1차·제2차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개정협상에 대비
- 양국은 2018년 1~3월까지 1~3차 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 도출 및 공동선언문 발표(2018.3.28)
 -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는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문서로 구성
 - ❖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합의함

■ 한국정부의 관심 개정이슈

●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개선

-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ISDS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하여 정부의 응소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함

ISDS 남소 제한	①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진행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ISDS 절차 개시·진행 불가
	② 중재판정부가 본안 전 항변 단계에서 신속절차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명백히 법률상 이유(legal merit)가 없는 ISDS 청구 추가
	③ 다른 투자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ISDS 남소 제한	④ ISDS 청구시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⑤ ‘설립 전 투자’를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 확대 해석 방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관련, ‘동종상황’ 판단에 있어 달리 대우하는 것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 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②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님을 명확화

- 최근 한국기업들이 외국정보·외국기업 대상 또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정부 대상으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ISDS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DS란 투자협정의 당사국 국적의 투자자가 타방 당사국의 투자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와 관련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중재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함
ISDS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가 간 조약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 보호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함 •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실체적 의무 규정과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규정으로 구성됨 • ISDS는 분쟁해결절차 중의 하나로 투자협정에 규정됨 • 한국은 현재 94건의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및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의 당사국으로, 한-EU FTA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BIT와 FTA는 ISDS를 두고 있음
ISDS 제기 일반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투자협정마다 차이가 있으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협정상 ‘투자자’가 투자자협정에 따른 ‘투자’를 하였을 것 ② ‘투자협정에 위반되는’ ‘국가의 조치’가 존재할 것 ③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 투자자가 투자협정상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하며 기타 절차적 요건도 충족해야함
최근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되는 ISDS 사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8월 기준 총 7차례 ISDS 피소국 (2018년에 2건의 ISDS제기, 2건 중재 의향서 접수) • 미국의 헤지펀드인 Elliott Associates LP는 2018.7.1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미FTA 내국민대우 및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하여 합병과정에 개입 → 삼성물산의 주주인 Elliott이 삼성물산의 주식가치 하락으로 약8천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

●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함

현지실사 절차 규정	현지실사 개최 일자 사전 통지, 실사 이전 실사 개요 및 준비 필요서류 사전 통지, 실사 이후 정보 검증 결과 등을 설명하는 서면보고서 작성 등 절차 도입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계산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공개, 수출기업에게 공개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제공 등 규정 도입

●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 기존 한-미 FTA 섬유류·의류의 원산지기준은 4단계인 ‘실-원사-섬유-의류’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Yarn-Forward Rules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기존의 섬유·원사(yarn)부터 역내산을 사용하고 역내 생산 시에만 원산지가 인정(원사 기준)되었던 것을 일부 공급부족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해줄 것을 추진
- 미국정부는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공급부족 판정 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기로 함

● 이행이슈 - 원산지검증

-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 원칙 합의, 원산지검증 작업반 신규 설치

인지기반 자율증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제6.15조)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중략)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수출자 및 생산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상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는 수출자/생산자의 소재에 대한 별도규정 미비 • 중계무역 및 글로벌 생산이 활성화된 무역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당사국 외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허용

<p>검증대상 서류의 사소한 오류·불일치를 기간을 두고 수정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출 이후 5~30일의 기간 내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보완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p>원산지검증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 대한 정보요청으로 수입당사국에 의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제6.18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p>원산지검증은 관세당국이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의심 하는 경우에만, 위험관리 원칙에 기초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제6.18조)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p>수입자·수출자·생산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상품 여부 문의에 대해 서면 사전심사 결정서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문 제7.10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 (중략) 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p>원산지 검증을 위한 정보요청시 특정상품을 명시하고, 정보요청 범위는 필요한 정보로 제한하며,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을 확인하는 차원
<p>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검증개시 이후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간 연장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검증 기간 장기화에 따른 기업불편 예방 차원에서 신속한 검증 진행에 합의 •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증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간 연장 가능 조항 마련

■ 미국정부의 관심 개정이슈

● 자동차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

- (관세)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기존의 10년차 철폐(2021년 1월 1일)에서 추가 20년(2041년 1월 1일 철폐)을 연장함(2040년까지 관세 25% 유지)

- ❖ 대상세번은 8704.21.00(디젤/5톤이하), 8704.22.50(디젤/5-20톤), 8704.23.00(디젤/20톤초과), 8704.31.00(가솔린/5톤이하), 8704.32.00(가솔린/5톤초과), 8704.90.00(기타)
- (비관세-안전기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연간 2만5천대 → 연간 5만대)
 - ❖ 미국산 자동차 수리를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시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한 대한민국 인증마크(KC)의 표시 방식상 부담 완화
- (비관세-환경기준) 연비·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 에코이노베이션 상한선 확대, 차기 기준(2021~2025) 설정시 미국기준 등 글로벌 동향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 확대(14.0g/km → 17.9g/km)
 - ❖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측 기준과 조화시킴

제3절 한-미 FTA 직접검증

■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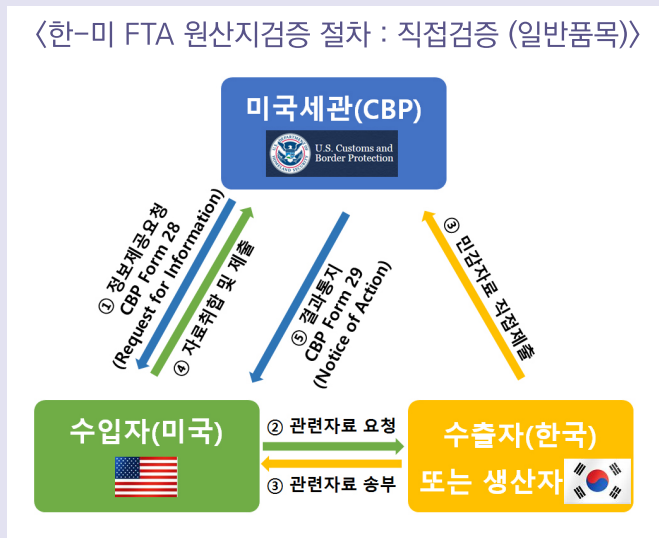
- 2018년 기준 우리정부가 전세계 52개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FTA 수출활용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원산지 검증요청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의 미국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미국세관(CBP)의 한-미 FTA 원산지검증도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짐
- FTA 원산지 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은 체약당사국간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의 FTA 특혜관세 수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배제 또는 수입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임
 - 원산지 사후검증의 목적은 관세탈루 방지와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FTA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

■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의 기본절차 : 일반품목, 섬유류·의류 품목

- FTA 원산지 검증 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이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에서 검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섬유류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4.3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 <일반품목>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직접검증) 기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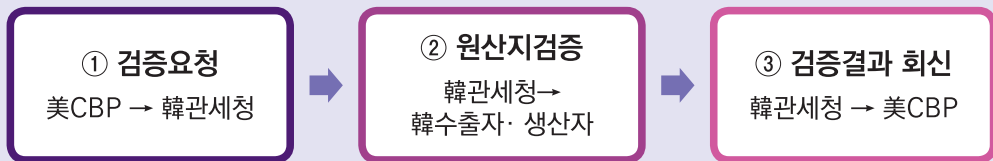
- 일반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은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을 수입자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됨
 - ❖ 미국의 수입자는 CBP의 요청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CBP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음
 - ❖ 기업의 민감자료일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CBP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 CBP는 서면검증 우선 원칙에 따라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며, CBP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근거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수출자, 생산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심층적인 원산지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CBP의 원산지검증 결과는 CBP Form 29(Notice of Action : 결정통지서)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됨
 - ❖ 만약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입증되면 긍정적 최종 결과가 통보됨
 - ❖ 하지만 원산지가 입증되지 못하면 먼저 예비결정(Proposed Action)이 이뤄지며, 20일 이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결정(Taken Action)으로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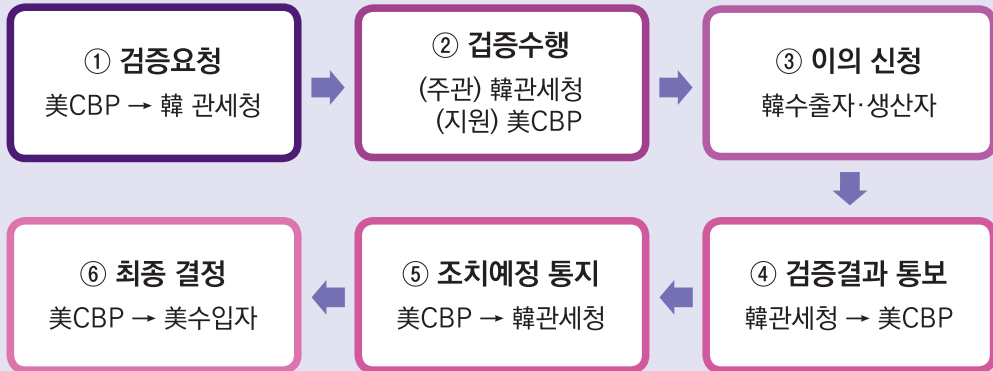
● <섬유류 및 의류>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 기본절차

-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한 CBP의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다만, 미국 세관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한국 관세당국과 합동으로 우리나라 내의 기업사업장에 대한 현지검증을 진행하도록 규정함
- ❖ CBP가 미국 수입자에게 CBP Form 28을 통해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간접검증 (섬유류 및 의류 품목)>



<합동 현지검증 (섬유류 및 의류 품목)>



[참고] 원산지검증 대상기업 선별기준

● 선별기준

- 공식적으로 CBP가 선별기준을 발표한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CBP는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다음의 수입신고건을 우선 검증함
- ❖ CBP가 전략적으로 검증하려는 품목(예: 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 ❖ 부정수입 등의 내역이 있는 업체

- ❖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
 - 섬유류 및 의류의 경우 다음의건을 우선 검증함
 - ❖ 제3국산 우회수출 물품 및 MID정보*를 기초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물품
 - ❖ 미국 수입 신고시 신고된 MID정보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제공한 '연례기업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 대미 수입량이 '연례 기업정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업체
- * MID 정보 : 제조자식별번호(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를 지칭하며, 제조자 국가명과 제조자명, 생산설비 영문주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최대 15자리 숫자
- * 연례 기업정보 : 한-미 FTA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조사된 전국 섬유, 의류 생산 기업들의 정보를 말하며, 공개 가능한 범위 내의 전국 3500여개 업체들에 대한 정보 제공(koatextile.org)

[참고]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의 수신 및 작성

● CBP Form 28의 수신 및 작성방법

- 미국세관은 FTA 원산지검증시 CBP Form 28을 통해서 미국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자료를 요구하며,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CBP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음
 - ❖ CBP의 원산지검증 원칙 중 '서면 우선 검증 원칙'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여 소명해야함
- CBP Form 28은 정보제공요청일, 인보이스(송품장)의 물품명, 인보이스 번호, 미국기준 HS 코드, 요청서류, 과세가격 관련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정보제공요청일
 - ❖ 1번 항목에 기재된 정보제공요청일(Date of Request)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준비한 소명자료를 CBP에 제출해야함
 - ❖ 30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CBP 담당자(Officer)에게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함
 - ② 원산지검증의 입증자료 요청
 - ❖ 14번 항목인 CBP 담당자 메시지(CBP Officer Message)를 통해서 원산지검증시 필요한 입증자료를 요청함
 - ❖ 13번 항목에서는 5개 사항(A~E) 중 체크한 자료만 제출함

● CBP Form 28 국문번역본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1. 요청일	
19 CFR 151.11		2. 수입신고일	
3. 제조자/판매자/선적인	4. 운송인	5. 수입신고번호	
5a. 송품장상 물품명	5b. 송품장 번호	6. 미국기준 HS Code	
7. 원산지/수출국	8. 관세사 및 참고파일 번호		
9. 수신인	10. 발신일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 정보의 제출 : 만약 귀하가 이 질문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CBP에게 다른 항구를 통해 제출하였다면, 제출한 항구를 기재하고 회신 사본을 이 부서로 제출합니다.	➡	11a. 항구	11b. 제출일
일반적인 정보와 설명은 뒷장을 참고하십시오			
12. 표시된 질문(들)에 답변하십시오		13.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A.	귀하는 이 물품의 판매자와 특수 관계 (뒷장 참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수입물품의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십시오.	□ A.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또는 구매 주문서와 판매자의 확인서)과 일체의 수정사항
		□ B.	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법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
□ B.	이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되는 경비/비용의 세부 내역 (1) 포장 (2) 수수료 (3) 사후귀속이익 (4) 생산지원비용 (5) 권리사용료	□ C.	완제품 생산시 구성요소, 재료나 구성 성분의 무게 및 구성요소의 실제원가
		□ D.	샘플제출 물품번호 및 설명 : 컨테이너 : 표시 및 번호 :
			분석에 사용된 견본품 및 특별히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E.	이하 14번 항목 참조		
14. 세관 담당자 메시지			

15. 회신 메시지(별도첨부 가능)			
16. 증명	이 증명은 적합한 기업 책임자가 작성하고, 요청된 정보에 대한 답변을 보증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서를 작성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요구사항이 아님)		
나는 요청에 의해 이 양식에 따라 제출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제공된 샘플이 이번 수입 건에 의한 선적으로부터 수취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16a. 서명자의 성명 및 직급 (소유주, 수입자 또는 기업임원)	16b. 서명	
		16c. 전화번호	16d. 작성일
17. 세관 담당자	18. 부서	19. 전화번호	
20. 팩스번호	21. 이메일		

[참고] 검증대응 기본자료의 제출

● CBP의 기본 요청서류

- CBP가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입증서류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입증자료 이외에 CBP Form 28의 14번 항목 ‘CBP 담당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품목 및 검증사유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함
- CBP Form 28을 기본 요청서류는 원산지증명서(C/O) 외에 아래의 서류들이며, 제출자료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거나 영문/국문을 병기해야 함
- 서류 작성 시 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포함하도록 하며, 부정확한 서류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항목 또는 필요정보 누락 시 원산지검증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함

- 원산지증명서(C/O)
- 원산지(포괄)확인서(Origin Comprehensive Confirmation)
- 자재명세서(B/O : Bill of Materials)
- 세금계산서(Tax Invoice) 및 거래명세서 (Statement of Account)
- 원가자료(Cost Data)
- 원가자료(Cost Data)
- 생산 또는 제조 공정 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 품목분류 근거자료(Documentary Evidence of Tariff Classification)
- 기업소개서(Corporate Information)
- FTA 진술서(FTA Affidavit)

제Ⅱ장

미국의 통관 법제도

제1절 통관 조직 및 절차

제2절 최근 통관환경 이슈

제3절 주요 인증제도



제1절 통관 조직 및 절차

■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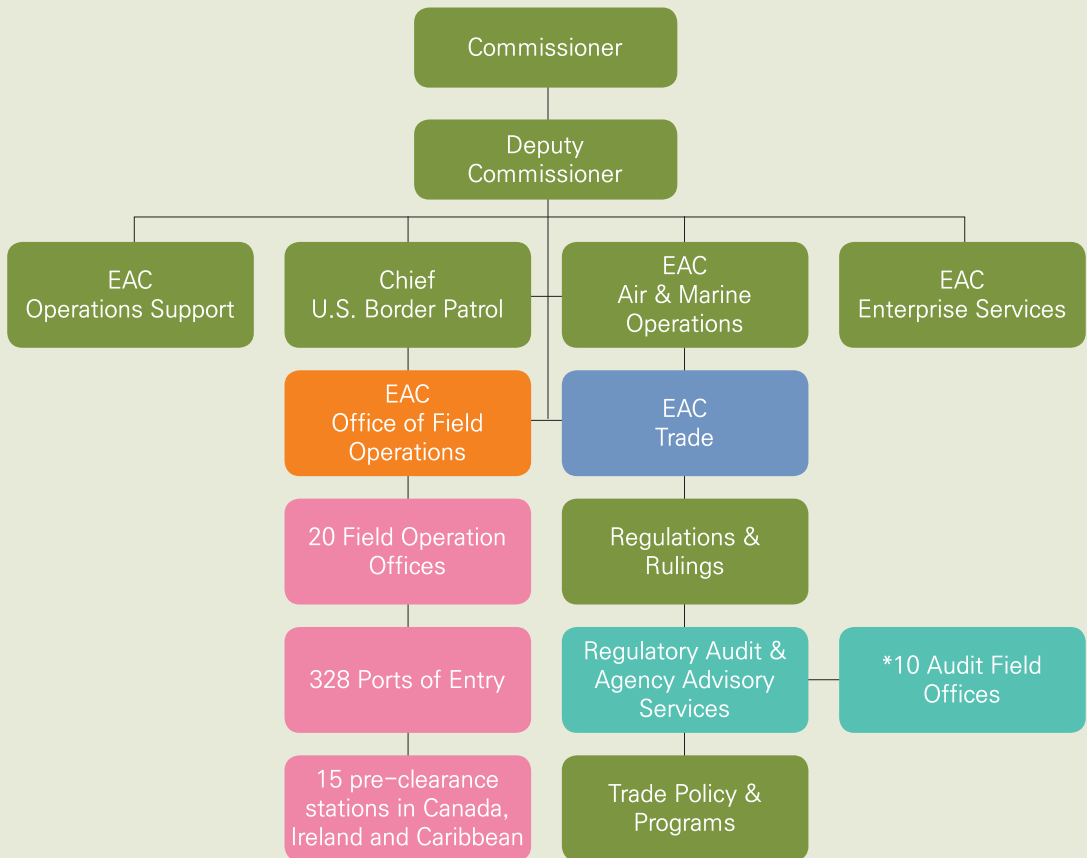
● 설립목적 및 주요활동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합법적인 무역과 여행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동식물 검역소 등 기관의 관련 기능을 모두 반영하여 설립됨
- CBP는 구체적으로 국제 무역과 통관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수료 등의 미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수입 보호, 미국 내 관세법 및 관계 법령의 집행, 선적 및 적하 조사 및 테러방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과 사람들의 감시 등의 임무를 담당함
-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시스템을 운영 중임
 - ① C-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대테러 민간 파트너십): 무역 당사자와 CBP가 협력하여 무역 당사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법규 및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AEO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특정 보안기준을 충족한 수입자는 신속한 통관절차를 적용 받으며, 이를 통하여 CBP는 고위험 물품에 더욱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음
 - ②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국경 간 통관처리를 통합하고 자동화하는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상업거래처리 시스템으로서 모든 통관절차를 전산화하여 처리함
- CBP의 운영지원국에서는 산업분야별 10개의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Expertise)를 통하여 해당 분야별 관행에 따른 통관절차를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

● CBP 개요 및 조직

-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내의 관세국경보호청(www.cbp.gov)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표적자동화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과 수출자동화 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 등을 활용해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음

- CBP는 대통령이 임명한 청장(Commissioner)을 필두로 최고 운영 책임자인 차장 하에 국경순찰대, 항공해상국, 정보기밀연락담당국, 대외무역국, 공보국 등과 함께 20개의 현장운영국을 두고 있으며, 현장운영국은 미국 국경의 327개의 통관항과 15개 사전허가 사무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운영을 지원함
- CBP 조직도(검증부서)



주 : 검증 관련 주요 부서만 표기, EAC(Executive Assistant Commissioner)

자료 : 2018년 11월 기준, CBP 공식 홈페이지(<https://www.cbp.gov/contact/office-of-trade-contacts>)

- CBP는 원산지검증을 특정 수입신고 건(Single Transaction)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Total Transaction)으로 나눠 운영함. 특정 수입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주로 관할세관 차원에서 수행하고,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은 주로 CBP 본청 차원에서 수행함

- ❖ (특정 수입신고 건) 현업 관리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관리 하의 20개 지역관리청(Field Operation Offices)과 328개의 통관항(Ports of Entry) 소속의 물품검사공무원(Officer) 및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이 검증을 수행
- ❖ 2016년 3월부터는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를 통한 산업별 특화된 원산지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10개의 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를 지정해 주요 항구 도시에 있는 10개의 지역관리청(Field Operation Offices)을 중심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 ❖ 10개의 CEE를 관리·운영하는 지역관리청은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버팔로, 러레이도, 휴스턴, 뉴욕에 위치하고 있음
- ❖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 기업심사과(Regulatory Audit)와 산하 10개의 감사 전문 지역관리청(Audit Field Offices)의 심사전문관(Auditor)과 현업 과장(Field Director)이 검증을 수행함. 10개의 감사 전문 지역관리청은 애틀랜타,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휴스턴, 롱비치, 마이애미,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함

● 미국 수입통관행정제도의 특징



● 미국 수입통관제도의 주요 특징

- **안보지향(Security Oriented)** : 2001년 9.11테러 이후 美관세청은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항만보안법(Port Security Act)에 따른 전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수입자·관세사·포워드·선사 등 공급사슬 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대테러 예방 프로그램인 물류공급안전 보안기준(C-TPAT)준수를 권장하고 있음
- **다중검사시스템(Multiple Inspection System)** : FDA(식약청), CPSC(소비자안전보호위원회), USDA(농림부)등의 연방기관이 CBP의 통관절차와 별도로 독자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 ❖ 각 기관들은 취급 물품에 대한 심사, 검사,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물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에 맞춘 검사 완료 시 수입물품의 반출이 가능함

기관명	취급물품
FDA(식약청)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사료 및 수의사용품
USDA·APHIS (농림부, 식품안전검사청)	농축수산물
EPA(환경청)	자동차, 자동차부품
FCC(통신위원회)	핸드폰,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등 무선통신기기
FWS(수산야생동물청)	어패류, 야생동물, 식물 및 그 가공품
CPSC(소비자안전보호위원회)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소비자 안전용품

■ 미국의 무역안보(Trade Security) 통관제도

- 미국 세관은 안보위해물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화물정보를 수집하고, 위해요소 분석 및 검사를 시행
 - **24시간 전 사전신고제(24Hour Manifest Rule)** :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운송업자는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운송수단에 따라 상이함)에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적하목록을 CBP에 통보하도록 규정

* AMS :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문서로 미국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속 통관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통관 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 화물 검사의 목적이 더 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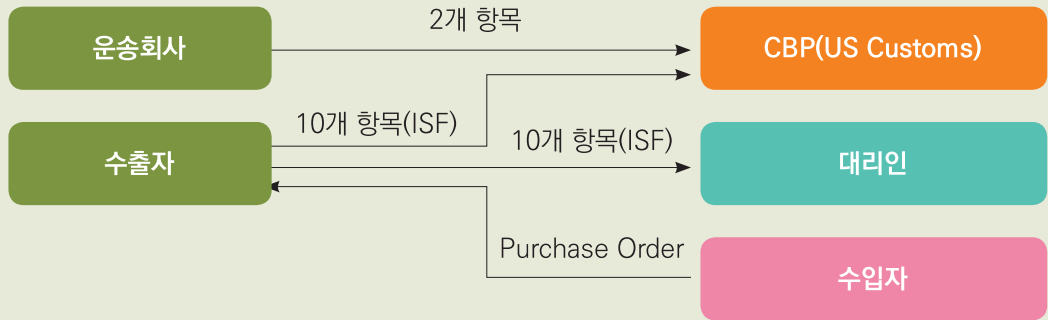
세관	세관통보시한
해상(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해상(벌크 화물)	미국 도착항 도착 24시간 전

세관	세관통보시한
해상(항해가 24시간 미만인 경우)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전
항공(일반적인 경우)	미국 도착항 도착 4시간 전
항공(단거리 : 캐나다, 멕시코, 기타 중남미)	출발 항에서 이륙하기 전
철도	미국 국경 도착 2시간 전
육로	미국 국경 도착 1시간 전

- **미국세관 수입자 보안자료 제출(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 정보에 대한 심사와 함께, 해상화물에 대한 충분한 위험예방을 위해 미국 내 수입자는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최소 24시간 전에 다음 항목의 사전정보를 자동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CBP에 제출해야함

- ❖ 수입자가 제출해야하는 10개 항목과 운송회사가 제출해야하는 2개 항목을 함께 Security Filing Requirement라고 하며 “10+2 Rule(규칙)”이라고도 칭함
- ❖ 제출시기 및 제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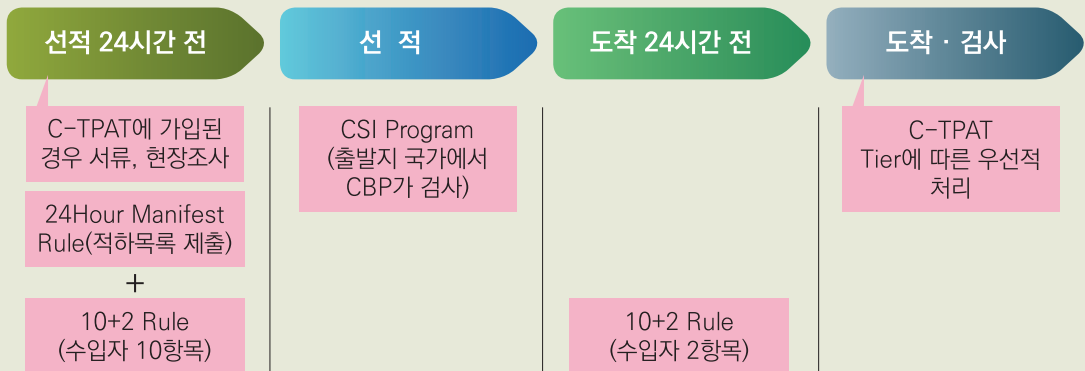
구분	전송주체	제출정보	제출시기	비고
10개 항목	수입자 - 소유주 - 구매자 - 수하인 - 관세사 - 대리인	1. Manufacturer(Supplier) : 제조자(공급자) 2. Seller(Owner) : 판매자(소유주) 3. Buyer(Owner) : 구매자(소유주) 4. Ship-to party : 수취인 5. Container stuffing location : 컨테이너 적입장소 6. Consolidator : 혼재업자 7.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 수입자 번호/FTZ 신청인 식별 번호 8. Consignee number : 수하인 번호 9. Country of origin : 원산지 10. 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 : HS 번호	선적 24시간 전	벌크(Bulk) 화물 - 24Hour Rule (24시간 전 사전 신고)
2개 항목	운송회사 - 선박회사	1. Vessel Stow plan : 화물 적재 계획서 2. Container Status Message :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출항 후 48시간 선적 24시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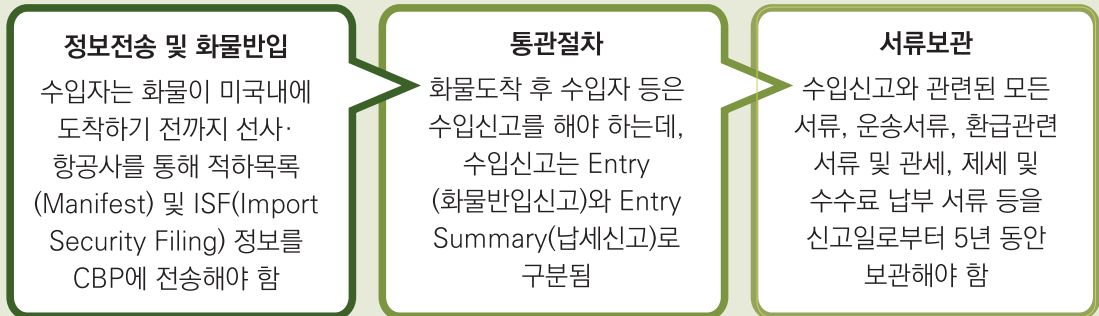
-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미국 세관당국과 미국 내 수입관련 기업 간의 테러방지 협약으로 물품의 생산·선적·보관 및 유통까지의 전 물류 공급망에 있는 유관업체들이 해당 물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임. 제조업 등의 공급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물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과 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 참여가 권장됨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rogram**: 외국항구에서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100% 검사 조치로, 실효성 부족과 물류지연 우려 등으로 현재는 연기된 제도
 - ❖ 출발지 국가에서 화물의 외형 등을 검사하기 위해 인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의미

● 단계별 통관규제 적용

- 미국의 다층적 물류보안규제는 공급사슬상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
 - ❖ 외국항구에서 24시간 전 사전신고제, ISF(10+2규칙)를 통해 사전정보 제공
 - ❖ 高위험화물의 경우 선적前 검사 필수
 - ❖ 현장검증에서 인증된 C-TPAT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관 시 검사비용 감소 검사화물 인수시간 단축 등의 혜택 제공



■ 미국 수입통관의 특징



● 수입신고는 화물반입신고(Entry)와 납세신고(Entry Summary)로 구분

- **화물반입신고(Entry)**는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로 우리나라의 화물 반출입 신고와 같은 성격이며, 세관양식 CBP Form3461(Entry/ Immediate delivery)을 사용
- **납세신고(Entry Summary)**는 세관이 세액결정, 통관자료수집, 他법령과의 합치여부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수입신고서와 같은 성격을 갖는 세관양식 CBP Form7501(Consumption Entry), CBP Form7502(Warehouse Entry)등을 사용

유형	화물반입·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관세담보(customs bonds) 제공 및 물품반출	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서식	CBP3461	CBP7501	CBP43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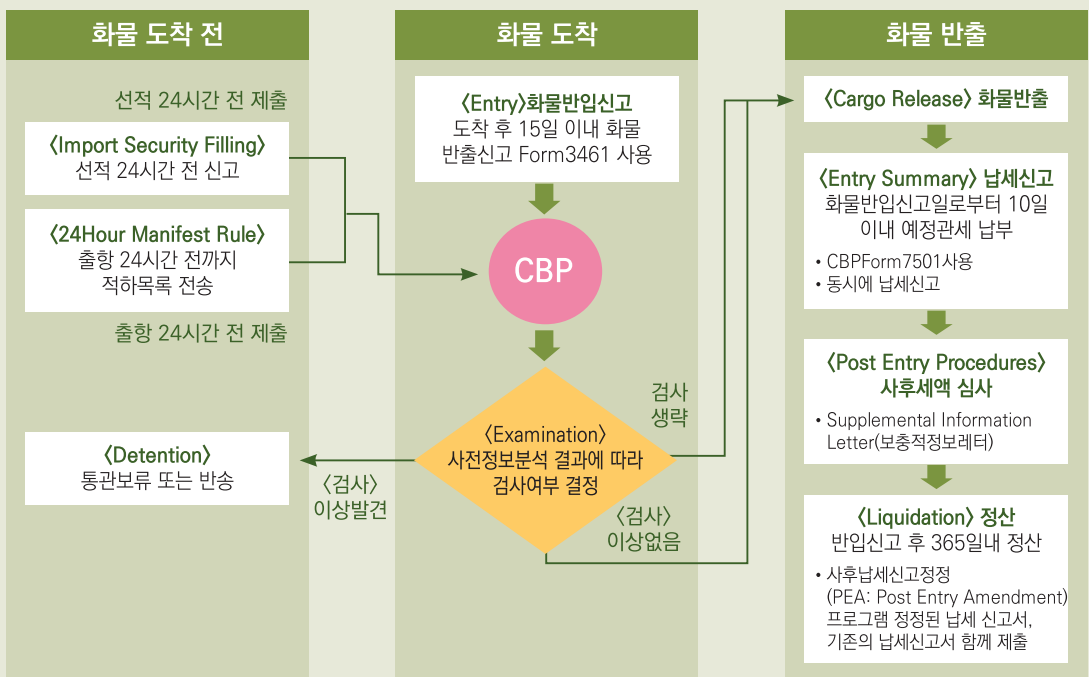
● 수입신고서류 제출방법 (분리제출이 일반적임)

- (분리제출) 'Entry' 제출로 물품 반출 후 화물 반출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관세납부와 함께 'Entry Summary' 제출
- (결합제출) 'Entry'와 'Entry Summary'를 동시에 제출한 후 세관의 검토를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화물이 반출되는 방식임 해당 결합제출 방식은 주로 쿼터품목에 적용되는 방식임

- 미국의 수입통관절차는 크게 ① 물품신고 및 반출 → ② 납세신고 및 관세납부 → ③ 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적하목록(Manifest)제출 → 화물반입신고(Entry)제출 → 화물검사(Examination) → 화물반출(Cargo Release) → 납세신고서(Entry Summary) 제출 및 예정관세액(Estimated Duties) 납부 → 물품반출 및 관세 확정 →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Procedures) → 최종관세 정산(Liqui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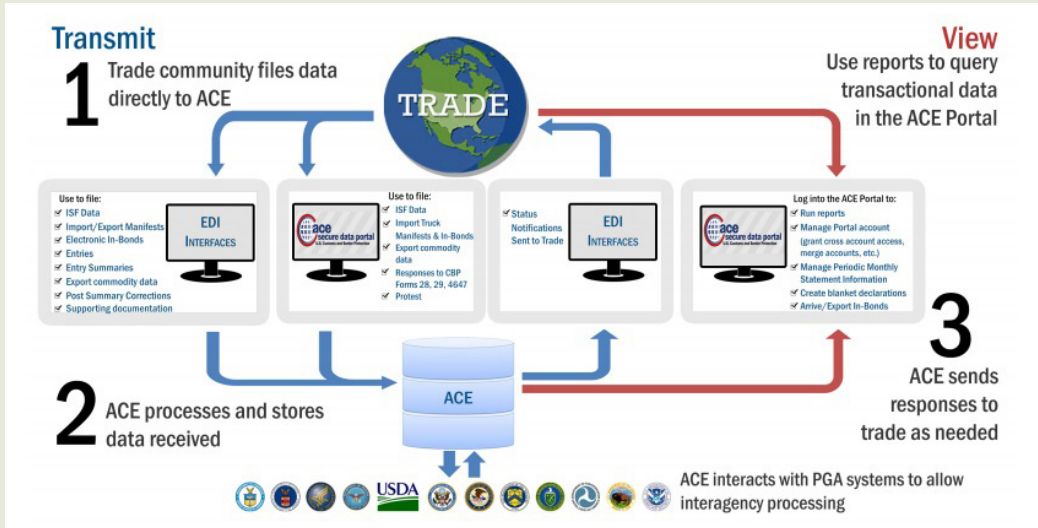
■ 미국의 통관절차 상세 흐름



● 화물반입신고(Entry)¹¹⁾

- 수입물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로,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미국에 도착하면 도착일로부터 15일 내에 CBP Form3461(Entry/Immediate delivery)을 이용해 화물반입신고를 해야 함
- (신청방식) 서면신청서 세관 제출, 전자적데이터교환시스템인 ACE* 및 ABI**를 통해 전송

11)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들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화물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됨.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을 위한 보증금을 준비해야함



- *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는 우리나라의 UNI-PASS처럼 현재 CBP에서 화물 관리를 전자화, 자동화하고자 구축하고 있는 자동 무역 시스템으로 CBP와 다른 수출입 관련된 연방기관 및 무역업계를 통합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수출입 화물을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함
- **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는 관세사, 수입자, 운송인 그 외 관계당사자들과 개인 서비스업자들이 수입-신고 관련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수입 신고 프로그램이며, 현재 96% 이상의 수입신고는 ABI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제출서류) 적하목록(CBP Form 7533),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제출 불가 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제출로 대체 가능], 포장증명서(Packing List),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물품신고 시 검사(Examination) 등의 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H.M.F (Harbor Maintenance F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두사용 요금으로 FOB 가격에 0.125%를 부과 • Ocean Shipment 해당, Air Shipment 해당하지 않음 •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부과하는 Processing Fee로 통관 및 화물 반출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 • Ocean/Air Shipment 모두 해당 • 수입가격의 0.3464% 부과 : 최소 \$25, 최대 \$485 • 한-미 FTA에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화물검사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의 화물검사에 대한 수수료로서 수입자 부담원칙·검사 수수료는 다양하게 적용

● 화물검사(Entry Examination) 및 검역

- CBP는 수입자의 화물반입신고(Entry)기재내용, ISF정보, 적하목록의 정보를 분석(Cargo Selectivity Module)하여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함
- 화물을 高위험 혹은 低위험 물품으로 선별 → 高위험 물품은 집중 현물검사, 低위험물품은 서면검사에 그침
- CBP의 현물 검사의 경우 농산품 및 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 신청 후 반출 전 수행됨. 식약청(FDA), 농무부(USDA)등의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른 검사 및 샘플 분석을 수행함
- 검사(Examination 유형)

검사유형	주요기능
VACIS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개장 없이 컨테이너 내부를 투사하여 화물검사 • 통상 24~72시간 소요
CET (Contraband Enforcement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화물, 밀수, 대량파괴무기 및 금지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 Customs Examination Station에 화물이 운송된 후 육안 검사
MET (Merchandise Examination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에 의해 실시되는 검사 • Random에 기초하여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를 점검 • 세액·수입요건·원산지·품목분류 및 IPR 등을 심사
US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목재 포장재·팔레트 포장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 종류 : Tailgate exam, Intensive exam, X-ray exam 등
F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FTA의 검사

- (기간) 관세청은 물품검사로 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물품반출 여부를 결정
 - ❖ 5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반출이 보류된 것으로 판단
- (절차) 검사 후 세관직원이 물품반입신고서(Entry)에 서명함으로써 반출 허가
 - ❖ 반출허가의 조건으로 수입자는 관세담보를 제공해야함
 - ❖ 담보금액은 관세 및 제수수료의 예상 납부금액으로 과거 담보조건의 준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결정 및 동의
 - ❖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담보(Customs bonds)로 제공

- (관세담보) 물품신고를 한 물품을 검사하여 반출이 허가되면¹²⁾ 수입자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각종 비용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세관에 보증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관세담보(Customs Bonds)를 제공하여 세관에 제공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 추후 예정관세액 납부를 하고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세담보를 구비하여 제출함
 - ❖ 최소 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 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금 성격의 보증금으로써 일회성 성격의 CBP Form 301(Customs Bond)과 1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포괄 적용되는 계속성 보증서(Continuous bonds)가 있음
 - ❖ 일회성 보증서 사용 시 해당 Customs bonds의 증서 제출 없이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으며, 계속성 보증서 사용 시 해당 증서번호의 제출 필요

Single Transaction Bonds(일회성 보증서)	Continuous Bonds(계속성 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건 별로 제공하는 Bond로 빈도가 낮은 수입자가 사용 • [담보액]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를 합한 가격, 타 기관 요건 확인·필요 물품은 신고가격의 3배 • Bond가액 대비 약 3.5%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 구입으로 1년 동안 해당 수입자의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 가능한 Bond • [담보액] chlth \$50,000 또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 합계액 10% 담보 • Bond 가액 대비 약 1% 수수료

● **납세신고서(Entry Summary)제출 및 예정관세액 납부**

- 수입자는 수입화물 반출 후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추정된 관세납부(Deposit)와 함께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함
 - ❖ 수입물품의 화주 및 그 대리인 (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신청가능
 - ❖ 납세신고서(CBP Form 7501)에는 화물반입신고서(Entry)번호, 원산지,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비용 등 총 43개 항목을 부호, 숫자 등으로 표시

12)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고 반출가능함

- (제출서류)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물품의 반출이 허가된 후에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반송된 통관관련 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관세 책정과 통계 자료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과 모든 수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식)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는 ACE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가능
 - ❖ 수입자가 물품반입신고 및 납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상업송장을 관세사 등에 송부하면 ACE를 통해 CBP에 해당 데이터가 송신됨
- 예정관세액 납부(Estimated Duties) : 수입자는 납세신고서 제출 시에 자율적으로 품목분류에 따른 세번의 결정 및 과세가격의 산정을 통해 관세액을 결정하여 예정관세액을 납부해야함
- 납세신고된 물품은 담보가 제공되거나 정산되기 전까지 반출될 수 없음
 - ❖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면 반출될 수 있으며,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담보가 제공되고 검사가 다음과 같이 완료된 후에 반출될 수 있음
 - 송장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치하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반출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 ❖ 만약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물품에 대한 세액의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물품이 반출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한 특별관세, 수수료 등 모든 관세, 제세가 납부되거나 관세가 면제되어야 함
 - 항만장이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야하고, 법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Procedures)

- 세관은 납세신고서(Entry Summary)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위한 사후심사를 진행
 - ❖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 등 최소 사항만을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통관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통관 후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함
 - ❖ 필요시에는 세관에서 추가정보를 요청함

● 정산(Liquidation)·확정관세액 납부(Liquidated Duties)

- 세액의 정산 및 세액의 최종 확정을 위한 단계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수입자가 납부한 예정관세액(Estimated Duties)과 납부해야할 세액(Liquidated Duties)을 비교하여 과다납부세액은 환급, 부족 세액은 추가 징수하는 절차
 - ❖ (정산기간) 보통 화물반입신고서(Entry)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CBP Form4333A를 통해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최장3년까지 연장가능
 - ❖ (정산통지) CBP의 웹페이지(www.cbp.gov)를 통하여 게시
 - ❖ (재정산) 정산된 관세라도 최초 정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오류, 적용법령의 오류가 발견될 시 관세의 재정산(reliquidation)을 실시
 - ❖ 세액의 정산을 통해 수입신고의 수리 혹은 경정을 통해 통관 절차가 완료
 - ❖ 수입자, 운송인, 대리인 등은 수입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운송, 환급, 조세 및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 의무를 가지며 통관절차가 완료되었더라도 물품 반입신고 및 납세신고 관련 서류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 필요



●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 화물이 미국에 도착 시 수입자는 도착일로부터 15일 내에 통관항 세관에 화물반입신고를 하여야함 (Entry 제출)
- CBP Form3461에는 도착일자, 도착항구, Entry Number, 원산지국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4 Exp. 08-31-2018	
ENTRY/IMMEDIATE DELIVERY 19 CFR 142.3, 142.16, 142.22, 142.24, 149.3				
HEADER INFORMATION				
1. PORT OF ENTRY:		2. BOND TYPE: <input type="checkbox"/> Single Transaction Bond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Bond <input type="checkbox"/> No Bond Required		3. IMPORTER NUMBER: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4. IMPORTER NAME AND ADDRESS:
5. ENTRY NUMBER:		6. BOND VALUE:	7. ENTRY VALUE:	8. CES:
9. ENTRY TYPE:		10. ORIGINATING WHSE ENTRY NUMBER (For Entry Type 22 Only):		11. SURETY CODE:
12. PORT OF UNLADING:		13. MODE OF TRANSPORTATION: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type="checkbox"/> Ocean <input type="checkbox"/> Rail <input type="checkbox"/> Truck <input type="checkbox"/> Hand Carry <input type="checkbox"/> Pipeline <input type="checkbox"/> Other		14. LOCATION OF GOODS (FIRMS):
15. G.O. NUMBER:		16. CONVEYANCE NAME/FTZ ZONE ID:		
HEADER REFERENCE INFORMATION				
17. REFERENCE ID CODE:		18. REFERENCE ID NUMBER (UP TO 50 CHARACTERS):		
HEADER PARTIES (MUST APPLY TO ENTIRE ENTRY; IF NOT, SKIP TO LINE INFORMATION)				
19. HEADER PARTY TYPE:		20. HEADER PARTY TYPE NAME/ADDRESS		21. HEADER ID #,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22. CERTIFICATION		23. CBP USE ONLY		
I hereby make application for entry/immediate delivery. I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accurate, the bond is sufficient, valid, and current, and that all requirements of 19 CFR Part 142 have been met.		<input type="checkbox"/> OTHER AGENCY ACTION REQUIRED, NAMELY:		
SIGNATURE OF APPLICANT:				
PHONE NUMBER:	DATE:	<input type="checkbox"/> CBP EXAMINATION REQUIRED.		
BROKER OR OTHER GOVT. AGENCY USE		<input type="checkbox"/> ENTRY REJECTED, BECAUSE:		
		DELIVERY AUTHORIZED:	SIGNATURE:	
			DATE: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4.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5 minute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90 K Street, NE, Washington DC 20229.				

CBP Form 3461 (02/16)

24. LINE INFORMATION			
LINE 1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LINE ITEM QUANTITY: _____ FTZ FILING DATE: _____	VALUE: 1. _____ 2.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2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LINE ITEM QUANTITY: _____ FTZ FILING DATE: _____	VALUE: 1. _____ 2.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3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LINE ITEM QUANTITY: _____ FTZ FILING DATE: _____	VALUE: 1. _____ 2.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LINE 4 HTS CODE: 1. _____ 2. _____	HTS / COMMERCIAL /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HTS <input type="checkbox"/> Commercial/Invoice Description: _____	LINE ITEM QUANTITY: _____ FTZ FILING DATE: _____	VALUE: 1. _____ 2. _____
COUNTRY OF ORIGIN: _____		ZONE STATUS: <input type="checkbox"/> P <input type="checkbox"/> N	
LINE PARTY TYPE: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input type="checkbox"/> Buying Party <input type="checkbox"/> Consignee <input type="checkbox"/> Selling Party	LINE NAME/ADDRESS: _____	LINE ID NUMBER,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RS <input type="checkbox"/> SSN <input type="checkbox"/> CBP Assigned _____	
BILL OF LADING INFORMATION (Use additional block below for a second Bill of Lading)			
25. <input type="checkbox"/> Non-AMS	26. <input type="checkbox"/> Split Bill	27. BOL TYPE: <input type="checkbox"/> In-Bond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House <input type="checkbox"/> Regular/Simple	28. SCAC/CARRIER ID: _____
29. IN-BOND NUMBER: _____	30. BOL NUMBER: _____	31. QUANTITY: _____	32. UNIT OF MEASURE: _____
SECOND BILL OF LADING BOL TYPE: <input type="checkbox"/> In-Bond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House <input type="checkbox"/> Regular/Simple			SCAC/CARRIER ID: _____
IN-BOND NUMBER: _____	BOL NUMBER: _____	QUANTITY: _____	UNIT OF MEASURE: _____
33. VOYAGE/FLT/TRIP: _____	34. CONVEYANCE: _____	35. ARRIVAL DATE: _____	

● 납세신고서 Entry Summary (CBP Form 7501)

- Entry 제출로 화물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화물에 대해 화물반출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납세신고를 하여야함
- CBP Form 7501은 우리나라의 납세신고서의 성격을 가진 세관 양식으로 Entry Number, 원산지국, 상품명세, 관세율, 관세 Fee 등 총 43개 항목 신고 필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APPROVAL NO. 1651-0022 EXPIRATION DATE 01/31/2021 ESTIMATED BURDEN 10 MIN	
ENTRY SUMMARY					
1. Filer Code/Entry No.		2. Entry Type		3. Summary Date	
4. Surety No.		5. Bond Type		6. Port Code	
7. Entry Date					
8. Importing Carrier		9. Mode of Transport		10. Country of Origin	
11. Import Date					
12. B/L or AWB No.		13. Manufacturer ID		14. Exporting Country	
15. Export Date					
16. I.T. No.		17. I.T. Date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20. U.S. Port of Unlading			
21. Location of Goods/G.O. No.		22. Consignee No.		23. Importer No.	
24. Reference No.					
25. Ultimate Consignee Name and Address			26. Importer of Record Name and Address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Line No.		29. A. HTSUS No. B. ADA/CVD No.		30.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33.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34. Duty and I.R. Tax Dollars _____ Cents _____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35. Total Entered Value		CBP USE ONLY	
\$ _____		Total Other Fees		A. LIQ CODE	
\$ _____				B. Ascertained Duty	
				C. Ascertained Tax	
				D. Ascertained Other	
				E. Ascertained Total	
				37. Duty	
				38. Tax	
				39. Other	
				40. Total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OR <input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OR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 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					
41. DECLARANT NAME		TITLE		SIGNATURE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address, phone number)		43. Broker/Importer File No.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CBP Form 7501 (2/18) Page 1 of 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CONTINUATION SHEET		OMB APPROVAL NO. 1651-0022 EXPIRATION DATE 01/31/2021 ESTIMATED BURDEN 10 MIN			
				1. Filer Code/Entry No.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33.		34.		
Line No.	29.		30.	31.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o.		Duty and I.R. Tax	
	A. HTSUS No. B. ADA/CVD No.	A. Grossweight B. Manifest Qty.	Net Quantity in HTSUS Units			Dollars	Cents		

● 관세담보 Customs bonds (CBP Form 301)

- 수입자가 해당 수입 거래에 관련된 수입 세액, 관세 및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겠다는 약속하는 관세당국과 수입자 사이의 계약을 나타내는 증서
- CBP Form301은 일회성 보증서에 해당하며, 수입의 빈도가 적은 수입자가 활용 가능하며 해당 Customs bond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서 제출 없이 물품 반출이 불가능함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APPROVAL NO. 1651-0050 EXPIRATION DATE 09/30/2020			
		CUSTOMS BOND 19 CFR Part 113			
Broker Filer Code: _____ Surety Reference Number: _____		CBP USE ONLY BOND NUMBER (Assigned by CBP)			
In order to secure payment of any duty, tax or charge and compliance with law or regulation as a result of activity covered by any condition referenced below, we, the below name principal(s) and surety(ies), bind ourselve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amount or amounts, as set forth below.			Execution Date		
SECTION I – Select Single Transaction OR Continuous Bond (not both) and fill in the applicable blank spaces.					
<input type="checkbox"/> SINGLE TRANSACTION BOND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 secured by this bond (e.g., entry number, seizure number, etc.)	Transaction Date		
<input type="checkbox"/> CONTINUOUS BOND		Effective Date	This bond remains in force for one year beginning with the effective date and for each succeeding annual period, or until terminated. This bond constitutes a separate bond for each period in the amounts listed below for liabilities that accrue in each period. The intention to terminate this bond must be conveyed within the period and manner prescribed in the CBP Regulations.		
SECTION II – This bond includes the following agreements. Check one box only. (Except 3a may be checked independently or with 3.)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Activity Code	Activity Name and CBP Regulations in which conditions codified	Limit of Liability
<input type="checkbox"/> 1	Importer or broker\$113.62		<input type="checkbox"/> 8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113.70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a	Drawback Payments Refunds\$113.65		<input type="checkbox"/> 9	Neutrality\$113.71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2	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113.63 (Includes bonded carriers, freight forwarders, cartmen and lightermen, all classes of warehouse, container station operators)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0	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113.72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3	International Carrier\$113.64		<input type="checkbox"/> 11	Airport Security BondPart 113 App A	
<input type="checkbox"/> 3a	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113.66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2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Exclusion BondPart 113 App B	
<input type="checkbox"/> 4	Foreign Trade Zone\$113.73 -Continuous Bond Only-		<input type="checkbox"/> 14	In-Bond Export Consolidation Bond	
<input type="checkbox"/> 5	Public Gauger §113.67		<input type="checkbox"/>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put type="checkbox"/> 6	Wool & Fur Products §113.68 Labeling Acts Importation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6	Importer Security Filing (ISF)Part 113 App D	
<input type="checkbox"/> 7	Bill of Lading\$113.69 -Single Transaction Only-		<input type="checkbox"/> 17	Marine Terminal Operator -Continuous Bond Only-	
PRINCIPAL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By checking the box you agree that you have a seal in accordance with 19 CFR 113.25 ▶ CBP Identification Number:		AFFIX SEAL or Check Box	
		Signature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any charge against the bond under any of the listed names is as though it was made by the principal(s). Principal and surety agree that they are bound to the same extent as if they executed a separate bond covering each set of conditions incorporated by reference to the CBP regulations into this bond. If the surety fails to appoint an agent under Title 31, United States Code, Section 9306, surety consents to service on the Clerk of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r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here suit is brought on this bond. That clerk is to send notice of the service to the surety at: ▶			Mailing Address Requested by the Surety		
SURETY					
Name and Physical Address (including legal description and state of incorporation)		Surety Number		Agent ID Number	
		Signature		<input type="checkbox"/> Check Box	

제2절 최근 통관환경 이슈

■ 수입자의 위험부담 회피에 따른 DDP/LDP 무역거래 확대

● 미국 내 상거래 변화 및 수입자의 위험 회피 목적의 무역 거래조건 변화 추세

- 미국은 전통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 상의 FOB 조건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많은 수입자들이 DDP(Delivered Duty Paid : 정형거래조건), LDP¹³⁾(Landed Duty Paid: 통관 후 바이어가 원하는 장소로 인도) 조건으로 수입하기 시작

* 인코텀즈(Incoterms) : 판매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물품의 운송, 보험 및 관세 등)을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세계적 표준거래방식

-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며 수출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제품 판매 후 해외 생산기업에서 최종 소비자로 제품을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온라인 소규모 거래 활성화
 - ❖ 기존 유통 방식에서 필요하던 재고보유 및 유통창고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FOB조건보다는 DDP 및 LDP 조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선호되고, 배송의 부담이 수입자에게서 해외 생산기업에게 전가되는 경우 증가
- 2005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 수입 통관에 따른 위험 및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바이어들의 DDP, LDP 조건 수입 선호 증가
 - ❖ 미국 세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중국산 여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을 위한 수입자에 대한 생산 정보 요구 증가

[수입자의 위험회피를 위한 무역조건으로 DDP, LDP기반 거래 활발]

LDP란, 수입국 내의 관세 등 수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 세관절차에 대한 부담이 수입자에게 있어 최소화 되는 조건임. 실제 화주(바이어)가 무역 위험 및 통관 절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 상에 수입자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며 LDP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증가

- ❖ 섬유제품관세, 지적권, 원산지, 식품안전 등 통관단계 위험 회피목적
- ❖ 수입규제 등 법규준수 의무를 부담하기 꺼리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시장 형성
- ❖ 수입신고 및 운송전체를 패키지로 저가 운송주선 경쟁 심화
- ❖ 저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목적 저가신고 관행

13) 수출자가 세관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와 물품 배송까지 책임지는 조건

● (미국법인이 없는) 수출자의 미국 수입통관 진행 방법

- 외국 수입신고자(Foreign Importer or Record)로 세관에 등록
 - ❖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통관번호(Customs Assigned Number, CAN) 발급
 - 세관 보험(Customs bonds)에 가입하여 통관 진행
 - ❖ 물품 배송 시 고객사의 미국세청 등록납세자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받아 통관서류에 기재

● 미국 세관의 DDP 및 LDP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추세

- 미국의 수입산 원자재 및 완제품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 원산지, 수입신고 등의 통관 문제 그리고 각종 수입규제들을 피하기 위한 바이어 증가
- LDP 거래에서 불법회사를 통한 통관 및 수량 조작, 언더밸류 등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정 수입 보전 및 통관 안보의 차원에서 CBP의 LDP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추세

※ 미국 바이어가 등록납세자번호(EIN) 제공 거부에 따른 불법 관행 증가

- ❖ LDP 거래를 요구하는 수입자의 경우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부담 및 관세 부담을 피하고자 최종 수취인으로써 EIN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 ❖ 실제 수입자를 대행해 통관만을 위한 서류상의 기업인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불법적인 무역활동 빈번히 발생 → LDP거래 관련 적발 사례 증가
- ❖ 불법행위 적발 시 수입물품 압수 및 수입신고자 자격을 갖춘 수입자가 통관 재진행하도록 조치
- ❖ 또한, 유령업체로 재수입할 수 없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우범업체로 기록

● 대미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미국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의해 LDP거래하는 국내 수출기업은 美세관 수입신고 관련하여 수입자의 의무, LDP거래법 위반사항, 불법 통관사례 유의사항을 사전에 이해하고 방지 필요
- 사후 CBP의 검증에 대비해 5년간 수입 관련 서류 보관 필요

■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우리 대미 수출기업의 통관환경 변화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무역 및 통관 관련 법령 강화

- 무역불균형 해소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명목으로 미국은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함
-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9월 기준 4,47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함
 - ❖ (美)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부과(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중국의 지재권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제301조)등 조치 적용
 - ❖ (中) 미국의 관세부과에 보복관세 대응, 미국 무역법 제301조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WTO제소, 미국기업의 활동 제재 조치
 - ❖ 미국CBP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2018년 7월 대중 보복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함 → 우리 수출기업 중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거친 완제품을 수출 시 원산지 판정 애로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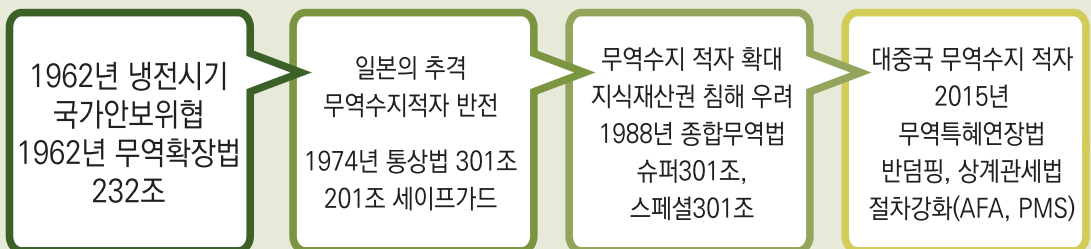
● 미국 관세당국(CBP), 통관조사 강화

- CBP Trade 심포지엄(2018년 8월)을 통해 향후 통관 행정 강화 발표

- ✓ 반덤핑·상계 탈루 우회수입에 대한 조사강화
- ✓ 통관·심사 행정 강화(쿼터, 원산지, 평가, 수입안전 등)
- ✓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강화
- ✓ 항공화물 사전선별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라 CBP업무 우선순위 변화
(기존의 테러, 수입안전 → 불공정무역, 관세수입 확보)

〈미국의 보호무역과 통상법의 발전〉



〈미국-중국 분쟁절차〉

	내용	일시(2018)
미국	美USTR,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하는 232조 발표	3.1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특정 품목을 규제하는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명령	3.22
중국	중은 미국산 농축산물 등 128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3.1 232조 조치에 대해)를 부과	4.2
미국	美USTR, 301조 조치 해당 품목(1,333개) 발표	4.3
중국	중상무부, 미국산 제품 306개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	4.4
미국 중국	미-중 1차 협상	5.3~5.4
미국	美USTR 공청회 개최(1,333개 품목)	5.15~5.16
미국 중국	미-중 2차 협상(류허 경제담당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협상 팀 미국 방문)	5.17~5.18
미국 중국	미-중 공동성명서 발표(관세 부과 철회)	5.19
미국	백악관 301조 조치 향후 일정 발표(관세 부과 계획)-5.19 철회 계획 번복	5.29
미국 중국	미-중 3차 협상(힐버 로스 미 상무장관 베이징 방문)	6.2~6.3
미국	301조 조치 관세대상 최종품목(1,102개) 발표	6.14
중국	중국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 미국과 동등한 규모의 보복관세 조치 예고	6.16
미국	트럼프 대통령 美USTR에게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10%)조사를 실시	6.18
미국	미국 통상법 301조 조치 간접 중국에 대한 대미 투자 제한 조치 발표	6.30
미국	중국산 1,102개 품목 중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7.6
중국	미국산 659개 품목 중 545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7.6
미국	중국산 279개 품목(16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효	8.23
중국	미국산 333개 품목(16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발효	8.23
미국	중국산 5,745개 품목(1,879억 달러)에 대해 10% 관세 부과 발효	9.24
중국	미국산 5,207개 품목(600억 달러)에 대해 5/10% 관세 부과 발효	9.24

■ 미국 무역법 제301조 관련 ‘한-중 연결공정’제품¹⁴⁾ 원산지 판정 중요

● 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제301조)조치로, 한-중 간 연결공정 제품(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간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도 원산지판정에 따라 종전에 비해 높은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미국 무역법 제301조 :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혹은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는 경우 미국은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규
- 최근 미국-중국 간 통상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보복 관세 부과 시행, 보복 관세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실정

●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치대상인 품목*을 한국-중국 간 연결공정으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품목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인 상황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제품의 ‘수출국(country of export)’이 아닌 ‘원산지국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적용
- 즉, 한-중 연결공정 제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이뤄졌더라도 원산지 판정이 ‘중국산’이라면 보복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1차~3차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

구분	1차	2차	3차
품목 수	818개 (IT·기계 등 : 279개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 27~90류)	6,031개 → 5,745개 ¹⁵⁾ (농축산물 및 화학/전자제품)
총금액	340억 달러	160억 달러	2,000억 달러
관세율	25%	25%	10% (2018.9.24~) 25%(2019.1.1~)
발효일	2018.7.6	2018.8.23	2018.9.24, 2019.1.1

14) 제조 및 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산된 제품들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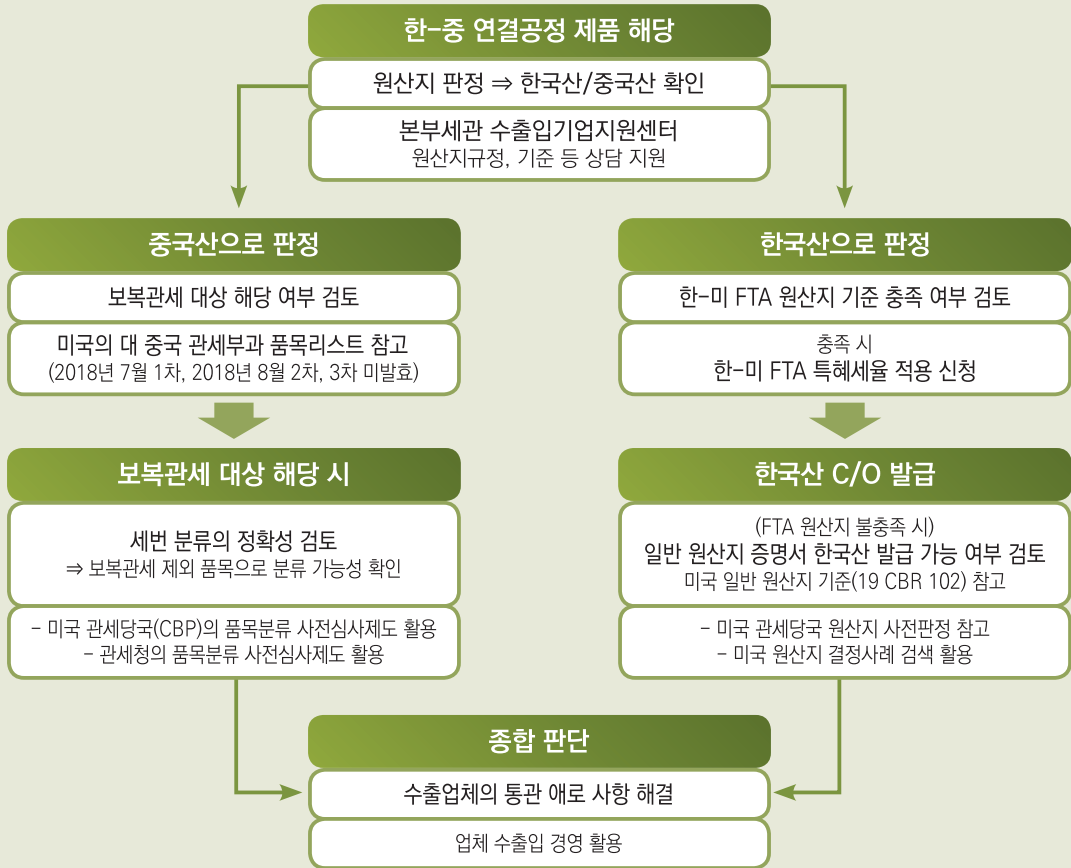
15) 미국 관세율표 8자리 기준의 품목 수이며, 전체 5745개 중 11개 세번에 대해서는 8자리 세번 이하 10자리 세번 중 일부 품목만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83 FR 49153 List 1), 나머지 5723개 품목에 대해서는 8단위 세번 이하 모든 품목이 부과 대상에 해당됨(83 FR 49153 List 2).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부과 대상 기준〉

- 제301조 관세는 중국물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
 (The section 301 duties currently only to products of China, and based on the country of origin, not country of export)

- 2018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제3차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현재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행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2018년 12월 1일 정상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향후 90일 간의 추가 협상을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3차 무역법 제301조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10% → 25%)을 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양보함
- **미국 관세당국(CBP)의 원산지조사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물품의 한국산/중국산 여부에 대한 신중한 원산지판정 및 보복관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애로를 사전 방지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 생산 기업은 해당 제품이 한국산이라면 한-미FTA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및 일반 원산지 규정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산'으로써 입증 및 C/O 발급 진행 필요
 - 한-중 연결공정 제품이 원산지 규정에 의거해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보복 관세 대상 물품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HS Code의 정확성 검토가 필요. 이때 수출기업을 위한 관세청 지원 사업 활용 등에 대한 고려 가능
-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책 구성**
 - 1차 특별 지원책 : 미국 무역법 제301조 통관애로 지원단 구성 및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안내 제공
 - 2차 특별 지원책 :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 경감, 수출신고 시스템 접속 시 미중 보복관세 부과에 대한 유의사항 자동 팝업 안내, 보복관세 해당 품목 수출업체 선별 및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발송
 - 수출입 기업이 수출품 원산지 사전확인 사업 참여시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가 적극 지원할 예정


〈“한-중 연결공정 제품”에 관한 원산지 판정 및 대응절차〉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와 품목리스트(1,2,3차) 및 진행사항 확인〉

방법미국무역상무부(USTR)홈페이지 (www.ustr.gov) → “Issue Areas” → “Enforcement” → “Section301 Investigations”

〈미국의 대 중국 보복관세 해당품목 빠른 조회방법〉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TRADE AGREEMENTS COUNTRIES & REGIONS **ISSUE AREAS** ABOUT US

Resource Center

- Enforcement
 - Overview of Dispute Settlement Matters
 - Opportunities to View Dispute Settlement Hearings
 -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ITEC)
 - Monitoring and Enforcement Actions
 - Section 201 Investigations
 - Section 301 Investigations**
 - How to Navigate the Section 301 Tariff Process
 - Request An Exclusion
 - Record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 Subsidies Enforcement
 - U.S. Proposals in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Negotiations

Home / Issue Areas / Enforcement

Section 301 Investigations

- [How to Navigate the Section 301 Tariff Process](#)
- [Section 301 Exclusion Process](#)
- [Record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 [Section 301 Hearings](#)

(1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8-13248.pdf>

(2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inal%20second%20Tranche.pdf>

(3차)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Tariff%20List_09.17.18.pdf

■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 원산지가 불인정됨에 주의

● 한-미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현재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이슈가 없으나, 추후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되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한국산이 아니므로 미국에 수출 시 한국산 C/O를 발급할 수 없음
- 과거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한-미 FTA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미국세관의 원산지조사가 있었음
-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한-EU FTA와 유사한 형태로 역외가공 규정을 협정문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 부속서를 통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한-미 FTA 부속서 나]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에 적절하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년이 되는 일자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 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 대미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 향후 남북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한-미 FTA 협정상 역내 원산지 인정여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곧바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 미국세관, 주류 소비세 환급 최종 규칙 발표

● 수입 시에 관세와는 별도로 징수되는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Excise Tax) 환급 규칙 발표

- 트럼프세제개혁의 일환으로(Tax Cuts and Jobs Act) CRAFT음료현대화세제개혁법(the Craft Beverage Modernization and Tax Reform Act 2017(CBMA))이 개정됨¹⁶⁾
 - ❖ 개정된 CBMA의 조항은 특정 주류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내국세 조항이며, 해당 CBMA의 조항은 2018년과 2019년 동안 유효함
 - ❖ 2018년 6월 CBP는 CBMA조항을 수입 주류에 적용하기 위한 초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10월 최종적인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을 발표함
 - ❖ 수입자들은 수입신고 시에는 소비세 전액을 납부한 후에 사후적으로 수입 시에 지불한 물품세액과 CBMA가 규정한 세액의 차액을 CBP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 맥주, 증류주임
 - ❖ 단, 해당 감면세율의 적용 대상은 검증 받은 해외 생산자로부터 수입되는 한정된 수량의 맥주, 와인 및 증류주이기에 미국 내 주류 수입자는 자신들이 수입한 수량이 검증받은 해외 생산자에게 감면 대상으로 할당된 수량 내의 물품임을 입증해야함
- 미국 수입자는 주류담배무역국(TTB)이 정한 특정 양식에 환급 신청
 - ❖ (외국 생산자 역할) 검증된 해외 생산자는 주류 공급 시 각 수입자들에게 해당 세제 혜택을 분배해야 하며, 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류의 수량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함
 - ❖ (수입자 역할) 본인이 수입한 주류가 해당 주류를 공급한 외국 생산자에게 법적으로 할당된 감면 세율 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류임을 입증
 - ❖ (필수정보)
 - 1) 외국생산자의 이름, 외국 생산자의 제조시설 주소 및 FSMA 등록번호
 - 2) CBMA로부터 할당량을 지정받은 검증된 해외 생산자로부터 한 해 동안 공급받은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 맥주 배럴(barrel)수, 와인 갤런(gallon)수 및 해당 수량이 명확히 특정 수입자에게 배분되었다는 증빙
 - 3) 수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외국 생산자 대표가 작년 동안 모든 수입자에게 제공한 배럴/갤런 양이 CBMA가 허용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증빙
 - 4) 검증된 해외 생산시설 대표자의 연락처

16) 참고지침 : https://csms.cbp.gov/viewmssg.asp?Recid=23602&page=&srch_argv=18-000403&srchtype=all&btype=&sortby=&sby

- ACAS가 본격 발효되기 전까지는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에 화물정보를 제출하였지만, 발효 후 미국행 항공사(도착·경유)는 해당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필수적으로 지켜야함
 - ❖ (제출정보) 무역법 제343a조(Trade Act of 2002 Section 343a)에 따라 화주이름, 화주의 주소, 수취인명, 수취인의 주소, 화물정보(총 수량, 중량), 항공 운송장 번호 등

(1) Air Waybill numbers	(8) Total weight
(2) Trip/flight number	(9) Precise cargo description
(3) Carrier/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code	(10) Shipper name and address
(4) Airport of arrival	(11) Consignee name and address
(5) Airport of origin	(12) Consolidation identifier (conditional)
(6) Schedule date of arrival	(13) Split shipment indicator (conditional)
(7) Total quality based on the smallest external packing unit	

- ❖ (제출주체) 원칙적으로 미국행 화물을 운반하는 항공사이지만, 화물에 대한 지식과 정확한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면 다른 당사자가 제출 가능
- ❖ (가이드라인) Air Cargo Advanced Screening(ACAS) Implementation Guide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Jun/ACASIG-v4.0-061318.pdf>

■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규제 적용 확대, 새우와 전복도 대상

● 미국 해양대기청(NOAA), 해양어업국(NMFS)은 미국 수산물수입 모니터링 제도(SIMP¹⁹⁾) 규제적용을 새우와 전복에도 확대 적용

- SIMP는 미국이 수입 수산물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구축한 전자 시스템의 일환으로 시스템 관리를 위해 도입된 표준화된 코드를 활용하여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이력을 관리함
 - ❖ 동 제도는 매그너슨 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에 근거를 두어, 법률 Sce.1857에서는 국가 간 혹은 외국 무역에서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면, 수산물의 수입과 교역을 금지함

19) 미국의 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SIMP(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가 본격 시행됨

- 미국으로 수입되는 13개 품목의 수산물 어획정보나 수출증명서 등을 수입업자를 통해 美세관당국에 제공 및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 ❖ 수입업체는 수입 수산물의 어획(생산)부터 미국 반입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ACE를 통해 제출해야함
 - ❖ 수입업체가 미국 수입 시 필수적으로 보관하고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생산자, 수산물 수산식품의 생산 및 가공, 수입자 기록 정보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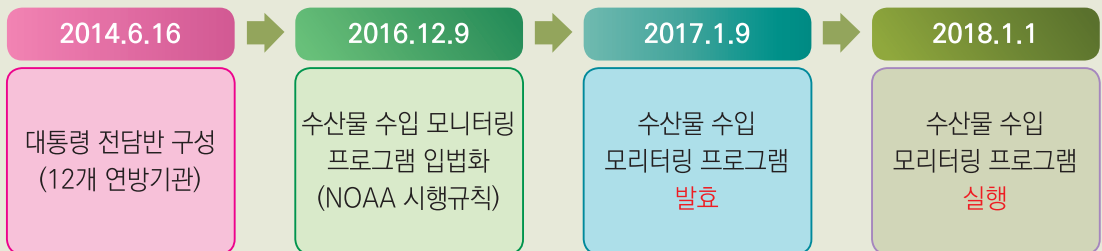
(1) 수산물 어획 또는 생산 주체 정보	(2) 생산·가공 수산물 정보
(3) 어획 및 양륙 장소, 시기 정보	(4)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 *수입자에 지정된 NOAA 국제수산물무역허가 번호

- ❖ (세부적인 필수제출 정보) 제품의 영문명칭, 학명코드, HTS 코드, 어획설명 코드, 국가코드, 처리날짜, 어구 종류, 환적 또는 최초 하역 시 제품의 가공형태, NMFS 국제수산물무역 허가 및 허가 발급일, 기타 어획허가, 어업코드 및 정보, 어획량 그 외 HCF, SVH 등의 추가제출정보
- ❖ 기존 SIMP는 IUU²⁰⁾어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수산물, 원산지 세탁 취약 수산물 등 13개 품종 수산물에 대해 우선 적용되어 왔으며 새우와 전복에 대한 적용 규칙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확대 적용 예정

[2018년부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산물]

전복(Abalone), 대서양대구(Atlantic Cod), 대서양꽃게(Blue crab), 만새기(Dolphinfish), 바리류(Grouper), 왕게(King crab), 태평양대구(Pacific Cod), 통돮(Red snapper), 해삼(Sea cucumber), 상어류(sharks), 새우(shrimp), 황새치(swordfish), 참치류(Albacore), 눈다랑어(Bigeye), 가다랑어(Skipjack), 황다랑어 (Yellowfin), 참다랑어(Bluefin)

●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수산물 HACCP 적용 등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자료: 미연방공보(81FR88975)

20) IUU어업: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 무보고, 무규제)어업의 약자로, 국제적인 불법 어업을 지칭하는 용어

■ 미국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및 인증 절차 간소화

● CBP는 TSCA(독성물질규제법)에 의거한 화학물질 수입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하는 신속 통관방식 전환하고 절차 간소화

- 2017년 3월 21일부터 신속처리프로그램(Expedited Release Programs)을 통한 화학물질 수입 시 수입 요구사항을 경감시키고자 정책변경을 발표
 - ❖ TSCA 수입증명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고 신속처리 프로그램으로 통관 시 사전제출을 면제하도록 개정
 - ❖ 신속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 전 단계에서 TSCA 인증 제출의 기술적 어려움이 확인되어 기존의 통관 전 단계에서의 필수적 제출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TSCA 인증 CBP 담당자가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정
- CBP는 TSCA인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옵션을 추가하고, 개별 확인과 관련된 종이기반의 일괄적 인증절차 폐지를 폐지하도록 규정 변경
 - ❖ 일괄인증서(blanket certification)란 하나의 인증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을 통관 시 일정 기간(1년) 동안 사용가능한 서류를 뜻함
 - ❖ 그러나 화물반출(cargo release)되기 전에 TSCA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ERP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
 - ❖ CBP에 따르면 인증과 인증 책임자 정보를 종이양식 또는 선하증권과 함께 Document Image System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준수 가능
 - ❖ 해당 신속 처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화학물질 통관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대미 화학제품 수출기업에 통관애로 사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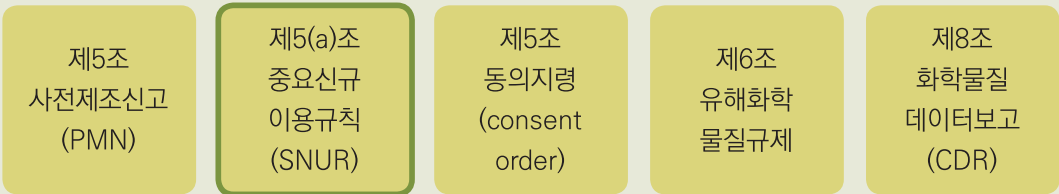
■ 미국 환경청, 145개 화학물질에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발표

● 미국환경청(EPA)은 특정 145개의 화학성분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최종 규정을 공표(2018년 10월 발효)

- 미국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의거해 미국 환경청(EPA)은 특정 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TSCA 제5(a)2조항에 근거하여 특정 화학물질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을 원하는 제조자 및 가공자는 EPA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이 신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야함

- 해당 규정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소 90일 전에 EPA에 통보해야함(Pre Manufacture Notification, PMN)
 - ❖ EPA가 지정한 해당 화학성분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SNUR을 포함해 독성물질규제법(TSCA) 및 적용 가능한 법적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해야함
 - ❖ 제조 전 신고를 통해 환경청은 신규 사용 대상 화학물질의 사용의도 파악 및 필요 시 사전 금지 및 제한을 목적으로 함
 - ❖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연방법 15USC2611(b)에 의거해 환경청에 신고해야하고 연방법 40CFR part707, subpart D에 명시된 TSCA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함
 - ❖ 해당 화학성분 확인방법 → 40CFR part721 subpart E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0/part-721/subpart-E>

TSCA 미국 연방법률 15편 53장 (USC Title 15 Chapter 53)
 제1절 유해물질관리(Subchapter 1)




- TSCA 제5(a)2조에 따른, 중요신규이용규칙(SNUR)의 여부는 EPA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함
 - ❖ 화학물질의 예상되는 제조량 또는 가공량
 - ❖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형태 또는 유형이 변화하는 정도
 - ❖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와 기간이 증가하는 정도
 - ❖ 예상되는 합리적인 화학물질의 제조방법, 가공방법, 유통방법, 폐기방법 및 화학물질 처분방법
- 미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 기존의 수입인증과 미국 독성물질규제법(TSCA)에 따른 수출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영향
 - ❖ TSCA section 13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입증해야함
 * 관련법령 : 15 U.S.C. 2612, 9 CFR 12.118~127, 19 CFR 127.28
 - ❖ SNUR 적용 대상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 준수했음을 입증해야함
 - ❖ 수출 대상 화학물질의 신규 사용 해당 여부 및 제조 전 신고 기일 등을 고려해 수출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관 애로 사항에 대비 필요



제3절 주요 인증제도

■ 미국 수출 시 필요한 산업별 인증제도



● 미국 인증제도 소개

- 미국 인증제도는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며, 강제인증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필수적으로 획득하는 인증임
- 산업별로 획득해야하는 인증이 다르며,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전에 숙지해야함
- 미국의 경우 공공의 안전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민간 차원의 산업별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산업	인증	구분	내용
전기 전자	 Underwriters Laboratories	자율 인증	<p>(근거규정) 연방규정집Title 29, Part19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인증은 가전기기, 냉동공조기기, 산업용제어기기 등을 포함해 약 19,000개의 제품에 대한 표준 재정을 시험 검사 및 인증의 기능 수행함 ❖ 인증대상품목 : 소방기기, 오디오, 비디오, 의료기, 계측기, 전선 및 케이블, EMC, 정보통신기기, 플라스틱, PWB, 기계류 등 ❖ UL 마크 표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제품의 제조,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자율 규제 제도. 다만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강제 인증으로 채택 <p>(제도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장치, 제품, 기기 등으로 인한 제반 위험이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능시험 및 평가를 통하여 측정 후 일정 기준 충족 시 UL 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방식 ❖ 반드시 사전 승인된 UL마크 및 시안으로 적용 및 제안 되어야함 ❖ 테스트 항목이나 범위,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증 및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되는 UL마크의 형태나 요건이 상이함 ❖ UL 인증마크는 UL 사후관리 서비스의 대상이 되며, 마크 적용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위조품으로 해석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p>유아 용품</p>	 <p>Juvenile Products Manufacturers Association</p>	<p>자율 인증</p> <p>(근거규정) Safety Standard for Carriage and Strollers Final Rule : 16 CFR 1112 and 1227 ASTM규정²¹⁾(제품에 따라 기준서 번호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품목: 아기용 욕조, 요람, 아기 부스터 의자, 유모차, 아기용 식탁 및 의자, 아기 침대, 아기띠, 그네 등의 유아용품 <p>(제도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유아제품제조사들의 모임으로 설립된 JPMA는 1976년부터 유아제품에 대한 제3자 자율 인증제도를 운영 중임 ❖ 유아제품을 ASTM에서 정한 기준 및 미국 연방법·주(州)법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규정에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증 후, 제품에 JPMA인증 SEAL을 부착할 수 있음
<p>의류 직물</p>	 <p>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p>	<p>강제 인증</p> <p>(근거규정) 16 CFR 1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직물에 대한 가연성 기준 ❖ 인증대상품목: 모직물, 편직물, 모든 종류의 직물(woven, knitted, felted) 천연섬유, 합성섬유, 얇은 막, 직물들을 사용하여 만든 옷/실내가구 <p>(제도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연성이 높은(불에 잘 타는) 옷의 제조를 규제하기 위한 법임 ❖ 가연성 기준은 미국 제품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를 통과해야함 ❖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보호위원회(CPSC)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CPSC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제품위험이 있을 경우 제품판매 제한 조치와 위험한 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명령과 처벌 조치를 시행함

21) ASTM F833-13b Standard Consumer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Carriage and Stroers, ASTM F2104-13a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Bassinets and Cradles

<p>식품</p>	 U.S. Food&Drug Administration	<p>(근거규정) FD and C act²²⁾, 바이오테러법(Bioterrorism act), 식품근현대화법(FSMA), 21 CFR(연방법규집) 및 지침서</p> <p>(제도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공 천연 식품류: 농산물, 수산물, 생육류 수산물류, 생건강 식품류, 등 모든 비가공 천연식품 중 포장된 식품 ❖ 가공식품류 : 가공음료수, 면류, 식용유류, 발효식품류, 과자/제빵류, 냉동/냉장식품류 중 포장된 모든 상품 ❖ 의약품류 : 생양약류, 생한약류, 제조양약류 등 포장된 모든 상품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A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 하거나 제품을 리콜할 수 있음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FDA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불순물 혼합 또는 허위표시 등의 규정위반 시 FDA에서 소송을 통하여 유해 제품 압수 할 수 있음
<p>의료 기기</p>	 U.S. Food&Drug Administration	<p>(근거규정) FD&C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에는 기계, 기구, 도구, 장치, 삽입물, 체외 시약 및 유사한 물품이 포함됨. 또한 의료기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품 및 그 구성품까지도 의료기기로 보아 인증대상으로 포함 ❖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효능 확인에 필요한 규제수준을 기반으로 1등급, 2등급,3등급, 총 3단계로 분류되어 품목별 인증을 위한 규제수준이 다름 <p>(제도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의 경우 일반규제(General Controls)가 적용되며 공장 등록(Form FDA2891) 및 제품등록(Form FDA 2892)이 요구 됨.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는 등록으로 시판이 가능함 ❖ 2등급의 경우 특별규제(Special Controls)가 적용되며 FDA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 등의 절차가 추가됨 ❖ 3등급의 경우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와 임상 실험이 필수적이며 임상실험은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실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심사가 요구됨

22)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 화학제품의 현지 수입규제 및 유의점

● 미국에 화학물질(제품)을 수출할 경우 환경보호국(EPA)의 독성물질관리법(TSCA)과, 노동안전위생국(OSHA)의 노동안전위생법(OSHA)에 의한 규제 이해가 필수

● 독성물질관리법(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 개요

-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혼합물 제품에 대해서 유해물질을 규제하고자 사전에 반드시 TSCA 및 기타 적용 가능한 환경규제법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 ❖ TSCA는 1976년 화학물의 제조, 처리, 상업적 판매, 사용 및 처분 과정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입법되었음. TSCA가 규제하는 화학물질은 기존 다른 연방 법률이 규제하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기존의 다른 연방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
- ❖ 여기서 화학물질은 특정분자식과 구조를 가진 유기 또는 무기화학, 고분자 및 UVCB물질(조성이 불명 또는 부정물질, 복잡한 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재료)을 포함
- ❖ (대상품목)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
- ❖ (제외품목) 다른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살충제,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방사성·핵물질, 군수 물자 및 담배제품은 제외대상
- ❖ TSCA는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

• 기존화학물질

- ❖ 1976년 TSCA가 제정되었을 당시 이미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던 화학물질이거나 그 이후에 제조, 수입, 가공되어 사전제조신고를 거친 화학물질이 TSCA의 기존화학물질목록(TSCA 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음
- ❖ 해당목록이 공개된 부분에 특정 화학이름과 “CAS등록번호²³⁾”가 포함되어 있음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목록(TSCA Inventory)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며, TSCA 제5조에 따른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fication, PMN)의 적용대상이 되어 수입자는 수입 전에 EPA에 신고해야함

23) CAS등록번호(국제통용화학물질번호)란 미국화학정보부문(Cheical Abstracts Service)가 부여하는 화학물질의 식별번호임

❖ 신고절차

1.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최소 수입개시 90일 전에 제조전신고서 (PMN)를 EPA에 제출
2. EPA는 90일 이내에 심사
3. EPA의 PMN승인을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NOC 제출
4. NOC제출 후, 신규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목록 (TSCA Inventory)에 기존 화학물질로서 분류, 등록

❖ PMN 신고 내용

1. 화학 물질 명세 (Chemical identity)
2. 생산량 (Production volume)
3. 부산물 (Byproducts)
4. 용도 (Use)
5. 환경방출량 (Environmental release)
6. 처분 방식 (Disposal practices)
7. 인체 노출량 (Human exposure)
8.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실험 데이터 (Existing available test data)

❖ 제조전신고서(Pre-Manufacturing Notice: PMN)면제규정

소량 면제 (Low Volume Exemption : LVE)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는 화학물질로서 심사기간은 30일
환경방출 또는 사람에게 대한 노출이 낮은 물질 면제 (Low Environmental Release and Human Exposure : LoREX)	저환경적 배출 및 저인체 노출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면제 범위를 설정 이러한 화학물질이 비합리적인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일의 심사기간 및 기타 면제 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안정장치를 마련
시험판매 면제 (Test Marketing Exemption : TME)	시험 판매용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해 면제
연구개발(R&D) 목적 면제 (Low Release and Low Exposure Exemption)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나 분석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가공할 경우 면제

• CBP의 화학물질 수입통관 시 인증요건

- ❖ 수입자는 화학물질 수입 시 “해당 화학물질이 TSCA 규칙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positive certification)”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TSCA 규칙 대상이 아닌지(negative certification)”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증명서를 CBP에 제출해야함(TSCA 제13조 참조)

-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독성물질규제법(TSCA)하에 규제되는 화학물질이 벌크 형태 또는 혼합물의 일부로 수입되거나 TSCA규제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수입업자나 중개인은 아래 두 가지 중 적합한 문장을 명시한 인증서에 서명한 후 미국세관에 제출해야함

(1) Positive Certification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또는 TSCA 규제 명령을 준수하고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TSCA 규제 및 모든 다른 규정을 위반한 화학물질을 제공하지 않음’

→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thereunder)’

(2) Negative Certification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은 TSCA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I certify that all chemicals in this shipment are not subject to TSCA)’

- 노동안전위생법(OSHA)

- ❖ (대상) OSHA의 규제대상은 미국 내 생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사업자
- ❖ 미국 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위험유해성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특히 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제공을 요구함
- ❖ 노동안전위생법(OSHA) 상의 위험유해성기준 규제는 미국 내 위험유해성화학품(Hazardous Chemical)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해당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라벨 표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3.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해정보전달프로그램 수립
4. 직원에게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사항

- ❖ 미국의 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위험하다고 평가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라벨표시를 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정보를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함

■ 가공식품의 현지 수입규제 및 유의점

- 미국의 가공식품수입 관련 규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국(FDA), 농무부 (USDA), 환경보호청(EPA)에 의한 다양한 수입규제가 있음. 대부분의 식품 제조·유통·수입 관련해서는 FDA소관으로 수입 및 유통 관련 규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미국의 가공식품 수입검사 절차
 - ❖ 가공식품 수입 시, 해당 가공식품의 위생기준, 상품라벨, 첨가물, 성분 및 색소첨가물 등이 FDA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
 - ❖ 바이오테러법에 의거하여, 식품관련 시설 등록, 화물 도착 전 화물의 내용을 FDA에 사전통지(Prior Notice)해야 함
 - ❖ 사전통지는 FDA의 사전통지시스템인터페이스(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PNSI)를 통해 도착 예정 15일 전까지 CBP의 자동브로커인터페이스(Automated Broker Interface: ABI)/자동상업시스템(ACE)를 통해 도착예정 30일 전까지 시행하면 됨
 - ❖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FDA는 국내기준에 맞는지 체크해야하며, 적합한 판정이 나게 되면 세관에 통지하여, 세관은 수입 통관심사를 진행하게 됨
- 식품의 위생관리·안전성에 관한 기준
 - ❖ 식품의약품화장품에 의거하여, FDA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포장, 보관 등의 “적정제조규범(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이라 불리는 위생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 GMP를 엄수하지 않고 제조, 포장된 식품은 해당 법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및 주(州)별 간의 거래가 금지됨
 - ❖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6년 5월 11일부터 강통 및 병의 용기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에 대해서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제조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식품표시에 관한 규제
 - ❖ 기본표시사항 : 식품 명칭, 정미내용량표시, 제조업자·포장업자·도매업자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복수의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함유량이 많은 순부터 해당 원료들 기재
 - ❖ 영양성분표시 : 영양표시교육법(NLEA)에 기반하여,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양의 함유량 및 건강측면에서의 효능에 관한 표시를 규제하고 있음
 - ❖ 또한, 영양성분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5월 약20년 만에 개정되어, 설탕에 대해서도 새로운 표시의무가 추가됨
- 바이오테러법에 기반을 둔 수속
 - ❖ 바이오테러법에 기반을 두고, 미국내외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함. 미등록 외국시설로부터 수입한 식품은, 통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또한,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FDA에 식품수입의 사전통지를 시행해야 함. 국제우편으로 식품을 발송하기 전 FDA가 전자정보에 따른 사전통지를 수신하고 확인하여, 소포에 FDA의 사전통지확인서를 부착해야 함

■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제

● 미국 식품첨가물 규제현황

- 미국의 식품첨가물은 FD&C Act(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와 연방규정집 Section21에 의거해 FDA의 규제대상이 됨
 - ❖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각각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병행 사용
 - ❖ 식품첨가물은 FDA의 미국 식품첨가물 리스트에, 사용허가 물질명 및 최대사용량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
- 규제대상이 되는 식품첨가물
 - ❖ 식품첨가물 유형은 크게 승인 대상이 되는 식품첨가물과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GRAS)으로 양분됨
 - ❖ GRAS : 미국의 특수한 제도로, 안전성이 높은 식품 성분에 대해서는 FDA 자율 신고 혹은 업체 판단 하에 신고를 면제하는 제도
 - ❖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첨가물과 용기포장 등에 첨가하여 식품과 간접 접촉하는 첨가물로 나뉘며, 가공보조제 및 영양성분도 식품첨가물로 포함
-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관련 규제

종류		설명	관리내용
식품 첨가물	직접 식품첨가물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성분	승인
	2차 직접첨가물	식품처리를 위해 첨가하는 추출 용매 등의 성분	
	간접 식품첨가물	포장, 가공기기의 일부로 식품과 접촉 가능하나 식품에 직접 첨가되지는 않는 성분	
	잠정 직/간접 식품첨가물	잠정적으로 사용 및 접촉이 인정되는 식품 첨가물	조건부 승인
색소첨가물(착색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착색 시 사용	승인 후 인증제
GRAS	GRAS 성분	소금,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	신고
	GRAS 사전승인 직접성분	FDA의 재검토 후 사전승인을 받은 GRAS 직접 성분	사전 승인
	GRAS사전승인 간접성분	FDA의 재검토 후 사전승인을 받은 GRAS 간접 성분	사전승인
신규식이원료(NDI)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식이보충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식이 원료	신고
식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사용 불가

■ Non Calories 식품 수출할 경우 필요한 성분 표시 유의점

● 미국의 식품표시는 FDA가 규제

-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tmetic Act: FD&C Act), 영양표시 및 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NLEA) 및 공정포장 및 표시법(Fair Packing and Labeling Act: FPLA)에 기반

● 식품의 품질표시 기준

- FDA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 식품 「표시기재사항」을 따를 것을 의무화²⁴⁾

1. 식품의 명칭
2. 정미량 표시
3.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4. 성분리스트(원재료 명을 기재, 중복된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 함유량이 많은 순으로 기재)
5. 영양표시(영양성분 표시)
6. 알레르기 표시(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유, 계란, 어류, 견과류, 밀가루, 땅콩, 대두를 특정하고 있음)

● 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 FDA는 영양표시 규정에서 한 끼 분량(serving size)과 영양(nutrition facts)의 표시를 의무화

❖ 한 끼 분량(serving size)

- 식품의 보통 1회 식사에서 섭취되는 한 끼 분량(그램)을 그램으로 컵/숟가락 몇 단위로 패키지(포장)에 1인분의 몇 회 분량이 포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함
- 음료 이외는 컵이나 스푼(용량은 미국 기준)등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FDA는 식품을 140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일반 소비 기준량(Reference Amounts Customarily Consumed : RACC)을 CFR101.12(최근 2016년 5월에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반 소비 기준량을 바탕으로 한 끼 분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FDA에서 공표하는 '식품표시 가이드 L64'를 참조하면 됨

24) [연방규칙집(CFR)Title 21 CFR101.2, 21 CFR 101.3, 21 CFR 101.4, CFR 101.5, 21 CFR 101.9, 21 CFR 101.105]

❖ 영양 성분 표시 (Nutrition Facts)

- 한 끼 분량에 포함된 영양 성분의 양을 표시함
- 항목은 총 칼로리, 총 지방량, 포화지방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량, 식이섬유, 당질, 설탕첨가물(꿀 등), 단백질, 비타민D, 칼슘, 철분, 칼륨의 순으로 표시함
- 또한, 그램 수와 영양 성분 양이 1일 2,0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 필요한 양(Daily Value)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표시함

● 대미국 Non-Calories 제품 수출시 표시방법

- 미국은 Non Calories와 동의어로 “Calories Free(칼로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를 표시하고자 하면 한 끼 분량 당 열량이 5kcal 미만²⁵⁾이어야 함
- 따라서 미국에 수출예정인 제품에 시럽 열량(kcal)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혹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한 끼 분량 당 5kcal 미만인 경우도 Calories free로 봄
 - ❖ 기타
“without calories”, “no calories”, “zero calories”, “free of calories”, “trivial source of calories”, “negligible source of calories”, “dietarily insignificant source of calories”도 마찬가지로 calories free로 봄
- 설탕의 kcal가 한 끼 분량 당 5kcal 이상 40kcal 이하의 경우 “low Calories(저칼로리)” 또는 “low source of calories”, “few calories”등으로 표시²⁶⁾
- 다른 일반적 표준 설탕보다 칼로리가 25% 이상으로 적은 경우는 “lower in calories(경 칼로리)” 또는 “fewer calories”, “reduced in calories”등으로 표시²⁷⁾

● Non Calories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예정인 품목에 포함된 당분 열량 값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한 끼 분량은 몇 그램 정도 하는지 그리고 숟가락(스푼) 기준도 구체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필수적임

● 또한, 열량 값은 공적검사기관을 통한 함유열량분석 검사를 실시한 후 기재해야 함

- 수출제품이 Non-Calories라는 표시의 증서로 함유열량분석 검사서 사본 제출 → 해당 증서는 미국 측 수입자가 보관해야함

25) [연방규정(CFR) Title21 101.60, (b)(1)]

26) [연방규정(CFR) Title21 101.60 (b)(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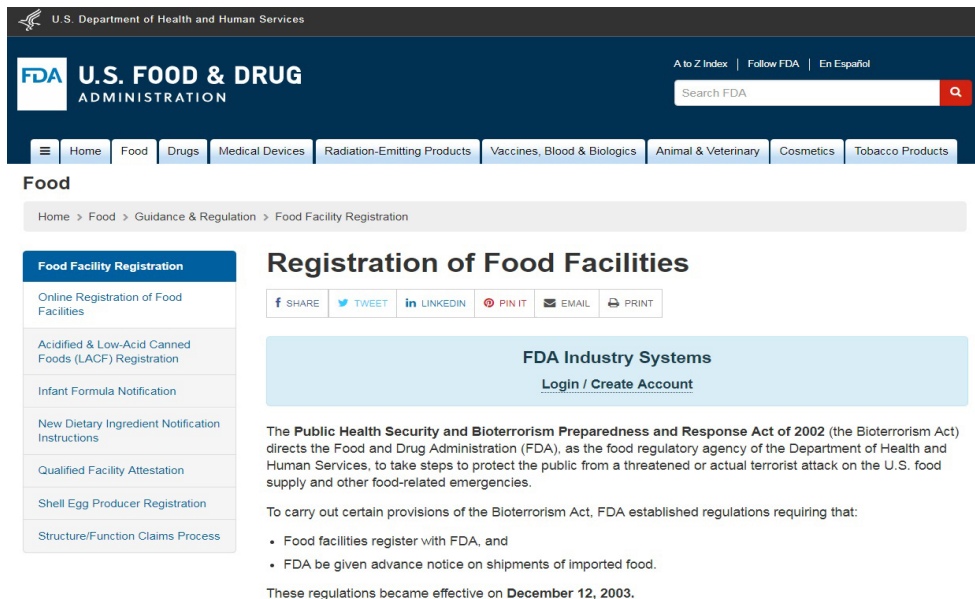
27) [연방규정(CFR) Title21 101.60, (b)(4)]

■ 미국 식품의약청(FDA) 식품관련 시설 등록 갱신 의무화

● 바이오테러법(공중보건안보 및 바이오테러에 대한 준비 및 대책법)²⁸⁾에 의거한 식품 관련 시설 등록(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제공되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한 미국 내외의 식품관련 시설에 대해 바이오테러법 제305조 식품업체등록규정에 따라 FDA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 비용은 무료이며, 등록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60일 이내에 수정해야함
 - ❖ 미등록 외국 시설로부터 수입된 식품은 통관 지연될 수 있음
 - ❖ 등록 및 갱신 방법

1. FDA의 식품시설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²⁹⁾ 혹은 갱신³⁰⁾



The screenshot shows the FDA website's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page. The header include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logo and the FDA logo. The main navigation menu includes Home, Food, Drugs, Medical Devices, Radiation-Emitting Products, Vaccines, Blood & Biologics, Animal & Veterinary, Cosmetics, and Tobacco Products. The 'Food' section is expanded, showing a breadcrumb trail: Home > Food > Guidance & Regulation > Food Facility Registr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and includes a 'Food Facility Registration' sidebar with links to 'Online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Acidified & Low-Acid Canned Foods (LACF) Registration', 'Infant Formula Notification', 'New Dietary Ingredient Notification Instructions', 'Qualified Facility Attestation', 'Shell Egg Producer Registration', and 'Structure/Function Claims Process'. The main content area also includes a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heading, social media sharing options, and a 'FDA Industry Systems' section with a 'Login / Create Account' link. Below this, there is a paragraph explaining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and the requirements for food facilities to register with the FDA, including a list of requirements and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s (December 12, 2003).

2. 온라인 등록이 안 될 경우 FDA등록양식(Form3537) 작성하여 우편/FAX제출
3. 여러 식품관련 시설을 등록할 경우, 기입한 등록 양식을 CD-ROM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
4. 시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FDA는 등록을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시설에 통보

28)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29) 온라인신청<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2006832.htm>

30)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 2016년 FDA 식품가공 시설 등록 의무에 관한 개정 사항 발표

- 2016년 7월 미국 내 식품 가공시설에서 미국 내 소비를 위한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시스템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개정된 식품 가공 시설 등록의 의무화는 2016년 9월 발효되었으며, 일부 개정 사항은 2020년부터 발효
- 중요 개정 사항
 - ❖ 2020년부터 모든 식품 제조시설 등록 및 갱신은 전자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
 - ❖ 식품 시설 등록 시 UFI(Unique Facility Identifier, 특정시설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함. 해당 번호는 식품 시설에서 행해지는 활동, 실제 우편 주소지 및 소유주의 이메일 주소, 시설 관리인 명 등이 포함됨
 - ❖ FDA의 등록 허가 취소 사유의 증가

■ 식품 수입 시 사전 신고(Prior Notice) 의무화

● 수입 시 사전신고(Prior Notice) 의무화

- 바이오테러법 제307조 사전신고 의무에 따라 수입업자 등은 수입식품을 FDA에 사전통지해야 함
- 적절한 사전통지 없이 수입된 경우 해당 수입품은 통관 지연되거나 FDA의 안전한 시설로의 이동 지시를 받게 됨
 - ❖ (기간) 세관시스템(ABI/ACE)을 통해 제출할 경우 도착 예정일 30일 전부터 가능, FDA시스템(PNSI³¹)를 통해 제출할 경우 도착예정일 15일 전부터 가능
 - ❖ (사전통지가 필요한 식품) 건강보조식품, 음료수, 과일, 야채, 수산물, 유제품, 냉동제품, 베이커리, 통조림, 캔디, 동물사료 등
 - ❖ (사전통지 필수 내용) 해당 식품의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수출업체명 등

● 기록의 저장 의무화

- 미국 내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수입하고자 하는 미국인(법인 포함)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 기록물을 보관해야 함

31)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의 약자이며,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importexports/importing/ucm075108.htm> 참조

- 수입식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 FDA는 식품에 대한 관련 기록물을 요구할 수 있음

바이오테러법 “식품” 정의에 포함	바이오테러법 “식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보조 식품 • 분유 • 음료(주류, 생수포함) • 과일 및 야채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유제품 • 식품 또는 그 구성 물질로 사용되는 비가공 농산물 • 통조림 및 냉동식품 • 빵, 과자류 • 살아있는 식용동물 • 사료 및 애완동물 식품 • 식품 및 사료 첨가제 • 식품 및 사료의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제409조(h)(6)에 정의되는 식품 접촉물질 • 살충제

■ 캘리포니아주 법령(proposition)65 준수 의무화

●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재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법령65를 준수해야함

- 「1986년도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섭취하는 식수에 게시된 화학 물질의 유입을 막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
 - ❖ 암, 선천적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목록을 게시하고 관리
 - ❖ 해당 목록은 1987년 최초 게시 된 후 약 1년에 한 번씩 개정되어 왔으며, 현재는 약 1,0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
 - ❖ (범위) 용제, 가소제, 첨가물 또는 살충제 성분, 일반 가정용 제품, 식품, 음료 및 사무용품 등
- 해당 법령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CalEPA) 산하 환경보건위해성평가국(OEHHA)이 주관하며, 화학물질이 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결정함
 - ❖ 법령65에 따라 목록 등재 기준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은 목록에 추가함
 - ❖ OEHHA에서는 천여 종의 독성물질을 지정하여 법령65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제조한 제조사, 제품등은 법령65 규제를 받게 됨

- ❖ (리스트)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 ❖ 유해물질 리스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갱신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 65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 지방 검사 및 市변호사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의해 집행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500에 상응하는 높은 벌금의 대상이 됨. 따라서 캘리포니아 지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은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함
- ❖ (최근 새로운 법령 65 확정 사항 리스트)

화학 물질	제품	확정 사항
비스페놀 A	휴대전화 케이스	BPA 3 ppm
	폴리카보네이트 텀블러, 스푼	BPA 없음
	감열지	BPA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을 것
납	아연 도금 못 덮개판(커버 플레이트)	100 ppm
	수갑/팔찌	전체 함유량 90 ppm 및 wipe test 통과
납, 프탈레이트	비닐/폴리염화 비닐 코드	DEHP, BBP, DBP, DIDP, DnHP 1000 ppm/ 납 100 ppm
프탈레이트	Simplify 그림 라이너	DINP 1000 ppm
	헤드폰, 비닐 식탁용 매트, 가방, 비닐 백팩, 비닐 지갑, 주얼리 정리함, 어린이 비옷	DEHP 1000 ppm
	폼 롤러	DEHP, BBP, DBP, DIDP, DINP, DnHP 1000 ppm

● 2018년 8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경고문 규정

- 2016년 8월에 새로 채택된 OEHHA규정은 법령65 경고문 규정 내용을 변경하여 8월부터 발효 예정이며, 경고문에 규제적용 대상 물질의 종류와 제품, 장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됨
 - ❖ 새로운 경고물 라벨 규정은 2018년 8월 30일 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제품에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기하기보다는 유독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야 함
 - ❖ 경고문에 경고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이름을 하나 이상 기재해야함
 - ❖ 독성물질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해당 물질로부터 노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에 OEHHA의 법령 65 개정안 웹사이트주소(<https://www.p65warnings.ca.gov/>)를 포함시켜야 함
 - ❖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웹사이트 경고가 제공될 예정이며, 'WARNING'이라는 문구와 함께 규정내용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함

■ 식품가공기계의 미국 현지수입 규칙 및 유의점

● 미국은 식품가공기계 수입 시 UL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과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

- 전기설비, 전기부품 등은 UL 인증을 거쳐 인증된 제품 및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의 노동안전법(OSHA) 및 안전기준, 제조물건책임(PL)을 충족해야 함
- UL인증
 - ❖ UL규격은 미국 보험업자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가 책정하는 제품 안전규격임
 - ❖ 재료, 부품, 장치, 도구류 등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능 및 안전성에 관한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UL규격의 인증취득은 자율인증이지만 주(州)법에 따라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UL 마크 부착 제품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선호하기에 UL 마크 미부착 시 대미수출 애로 사항 존재
 - ❖ 미국의 전기제품 상당수가 UL인증제품이며 국가규격으로서 ANSI/UL라고 함

구분	내용
UL규격 인증신청 절차	1.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 - 견적서, 제품개요 자료(사양서, 카탈로그/팸플릿, 사용설명서, 외관사진, 회로도, 부품목록, 안전 중요 부품에 대한 인증 획득 정보 등) 제출 - 인증기관으로부터 견적서, 필요한 샘플리스트, 서비스계약서등을 받기 때문에, 서명이 있는 계약서, 제품샘플, 제품자료 등을 제출 2. 평가 결과 통보 - 적합성이 확인되면, 완료통지 (Notice of or Completion: N of C)가 발행 - 필요한 경우 초기 로트검사 등을 받고, 검사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UL 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기관
 - ❖ UL규격의 인증에 관해서는 UL이외의 국가인증시험기관(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 NRTL)에 신청할 수 있음
 - ❖ NRTL은 노동안전위생국(OSHA)가 인증한 민간 시험기관으로 다양한 제품의 안전시험·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제III장

미국의 통상 법제도

제1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제2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BIG3 수출국의 新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미국편)



제1절 최근 수출입 정책의 변화

■ 2018년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의제

● 2018년 美무역대표부(USTR) 미국 통상정책 운영계획(Trade Agenda) 발표

- 미국정부의 통상정책 운영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 및 경제번영을 위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
 - ❖ 매년 3월 美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통상정책 운영계획을 제시하는 연례보고서인 Trade Agenda를 발표
-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5개 주요 정책우선순위를 발표
 - ❖ ①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통상정책 ② 미국경제의 강화 ③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한 통상협상 개선 ④ 미국 통상법의 시행 및 보호 ⑤ 다자무역체제 개편
- 한-미FTA에 따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 한국과의 무역불균형 해소, 협정이행 준수, 상품 양허의 재조정, 비관세장벽 해소 의지를 밝힘
 - ❖ 이에 따라 2018년 3월 1~3차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

정책우선 순위		내용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통상정책	Adopting Trade Policy that Supports National Security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지재권 침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구조를 거부하며 국가 주권을 추구하는 보호무역 기조 유지
미국경제의 강화	Strengthening the U.S.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개편) 미국 무역적자 감소 및 미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해외진출 미국기업의 이익을 국내로 귀속, 법인세 인하 등 추진 • (규제완화) 미국 동맹국 및 교역 파트너와 우호적인 투자환경 구축

정책우선 순위		내용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	Negotiating Better 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개정)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 및 무역불균형 해소, 협정이행 준수, 상품 양허의 재조정, 비관세장벽 해소 의지를 밝힘 • (NAFTA 개정) 조항 업그레이드, 원산지기준을 엄격히 조정하여 무역적자 감소
미국 통상법 집행과 보호	Enforcing and Defending U.S. Trade La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의 통상법이 얽매이지 않음 • 미국 통상법을 강화하여 중국의 불공정행위 대응(301조),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확대(201조, 232조)

■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무역재제조치

-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2015년 「교역촉진법」에 의거해 다음 3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재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 ❖ 3개 조건은 지난 12개월간 ①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③ 외환 순매수액이 GDP 대비 2% 이상인 경우임
 - ❖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2개 기준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시 무역협정, 투자, 환율 등으로 상대국을 압박함
 - ❖ 미국기업의 해당국 투자 시 미국정부의 금융지원 중단, 대미투자 승인 제약, 해당국 기업의 미국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IMF를 통한 환율 및 무역협정과 연계한 압박 등 여러 재제조치를 취함
 - ❖ 최근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 ❖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지정기준에 해당함
- 한국은 2016년 이후 6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2018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음
 - ❖ 10월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인도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됨
 - ❖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지정기준에 해당함

국가	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	외환 순매수
중국	390	0.5	0.0
일본	70	4.0	0.0
독일	67	8.2	-

국가	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	외환 순매수
한국	21	4.6	0.3
스위스	17	10.2	2.4
인도	23	-1.9	0.2

- 특히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시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 2018년 10월 환율보고서의 경우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환율관찰대상국을 중국 및 기타 5개국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등 미국의 중국측 환율 조작에 대한 감시 강화
 - ❖ 중국이 기준환율 결정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는 점, 위안화 절하에 따른 미국 무역흑자 악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시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화 절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사절차 및 집행(enforcement) 강화로 수입규제 효과 극대화
 - ❖ 무역구제조치 구분 및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반덤핑조치 (Anti-Dumping Measure)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혹은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적용 되는 조치임.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임
상계관세 조치 (Countervailing Measure)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임
긴급수입 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해당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임

- 미국의 대세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현황(2018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이 견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인 것을 알 수 있음
 - ❖ 반덤핑조사 품목별 분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생산과잉을 보이고 있는 철강분야에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다음은 화학제품임
 - ❖ 미국의 대세계 반덤핑 규제 현황

국가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일본	브라질	멕시코	인니	베트남	전 세계
반덤핑	119	22	26	25	19	12	13	10	10	352
상계관세	51	17	7	1	0	4	1	5	3	110
총합계	170	39	33	26	19	16	14	15	13	462

자료 : USITC

- ❖ 한국은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이며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품목인 철강, 화학제품 등이 수출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각국의 무역규제조치가 확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환경은 악화될 수 있음

■ 미국 무역규제 관련 법 개정 및 적용

●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 2018년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서 모든 사용가능한 통상법을 활용해 수입을 규제하고 불공정 무역과 관행을 시정할 것을 발표
 - ❖ 대통령의 권한이 높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무역제제조치로 교역 상대국을 압박

구분	발동조건	가능한 조치	주요이슈
무역확장법 제232조 (1962년 무역확장법)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품목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	관세부과, 쿼터	한국에 대해 철강제품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무역법 제201조 (1974년 무역법)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세이프가드 조치 단행	세이프가드 최대 150일 동안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대해 15% 관세부과, 수입 수량 제한	세탁기, 태양광 모듈, 세탁기에 패널 관세부과

구분	발동조건	가능한 조치	주요이슈
일반301조 (1974년 무역법)	무역협정 권리보호 및 미국 수출에 대한 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	위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제한, 무역협정 내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양허 등을 유예 등 보복조치	2017년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강제적 기술이전요구 등 부당 무역관행 조사내용에 대한 대통령 각서 서명
슈퍼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교역대상국의 무역장벽 및 불공정 무역행위 해소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대응책	
	제301조 발동권한을 USTR로 이전하고 보복조치 발동 강화		
스페셜301조 (1988년 종합무역법)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초점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또는 ‘감시대상국 (watch list)’으로 지정한 뒤 제재를 가함	-

● 2015년 미국은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TPEA) 발표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이 개정되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FA) 적용,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에서의 조사당국 재량권 강화가 이루어짐

구분	내용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³²⁾ 제6.8조에 따르면, ①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거부 ②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 거부 ③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경우에 이용가능 정보를 적용할 수 있음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 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높은 수준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음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조항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함. 자료 제출에 대해 불성실했다는 판단이 들 경우 보복 조치를 감행

32)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WTO 반덤핑협정

구분	내용
특별시장상황 (PMS: Particular Market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판매가격 및 원가에 왜곡이 있다는 조사당국의 결정을 근거로 조사대상기업이 실제 제출한 가격 및 원가 정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 •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시장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킴

- 미국은 개정된 법에 따라 외국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있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이전보다 더욱 쉽게 AFA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美상무부가 수출국의 시장가격 또는 비용이 PMS를 이유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시 정상가격을 계산하는데 대체 시장경제국의 비용을 활용한 구성가격 방식 등을 사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게 됨
- 대미 수출기업은 AFA와 PMS와 같은 한층 더 강화된 미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비하여 수출자료·원가자료를 준비해야함
 - ❖ 미국 상무부가 AFA조항을 활용하여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국내기업에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한편으로 미국 상무부의 절차법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을 둔 징벌적 수준의 높은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
 - ❖ AFA와 PMS를 사용하여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측면에서 제조원가와 관련해 협력사와의 사전 대응이 필수

■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대상 철강품목에 대한 규제

● 2018년 3월 미국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함

- 2017년 4월 美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품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 미국은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은 1962년 232조를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시켜 불공정 행위가 없어도 관세 및 쿼터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치
- 2018년 3월 말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철강 쿼터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월에는 철강에 대한 선별적 면제가 허용됨

- ❖ 6월 미국은 2015~2017년 한국의 대미 철강 평균 수출량의 70%, 아르헨티나는 135%, 브라질은 70%의 쿼터 적용
- ❖ 8월 미국은 한국·브라질·아르헨티나의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 면제를 허용
- 2018년 11월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수입국에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함

일시	내용
2017.4.20	트럼프 대통령 조사개시 행정명령 서명
2018.2.16	상무부 보고서 내용 공개
2018.3.8	대통령 결정(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과)
2018.3.22	특정국가에 대해 5월 1일까지 관세부과 조치 잠정 유예 *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2018.3.23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2018.3.28	한국에 대해 관세부과 영구 면제, 70%의 쿼터 제한 적용에 합의 (한-미 FTA 원칙적 합의)
2018.4.3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대해 관세부과 면제 대신 쿼터 제한 논의 특정국가에 대해 6월 1일까지 관세부과 조치 연장 * 캐나다, 멕시코, EU
2018.6.1	캐나다, 멕시코, EU에 관세 부과 쿼터 제한 적용 * 철강(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루미늄(아르헨티나)
2018.8.29	철강 쿼터 수용국가의 품목 면제 신청 허용 * 철강(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알루미늄(아르헨티나)

● 11월 현재 한국은 미국의 철강 쿼터 대상국이지만,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의혹을 받아 제232조 고관세(53%) 부과 대상국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지난 2월 미 상무부는 상위 20개 대미 철강 수출국 가운데 수입규제 대상 12개국 선정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국가(캐나다, EU, 대만 등)를 제외하는 한편, 한국과 같이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
- ❖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제232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저렴한 중국의 철강을 수입한 후 재가공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한국정부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 중 중국산 소재 사용 철강 수출량은 2.4%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등 적극 방어한 결과 제232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됨

● 미국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주요 우회수출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만큼,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제232조에 해당하는 철강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을 중간재로 수입하여 가공 후 한국산 제품으로 미국에 수출시 유의해야 함
- 또한 우회수출 관련, 한국이 수입하는 제232조 대상 중국산 철강제품은 미국의 전체 제232조 대상 철강제품 가운데 판재류 4개, 봉형강류 3개, 파이프튜브 6개, 스테인레스 5개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됨

품목	1위 수입국	대세계 수입(%)	HS 코드
판재류 (Carbon and Alloy Flat Products)	캐나다	27.3%	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 721030, 721041 ,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11, 722519,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11, 722619, 722691, 722692, 722693, 722694 , 722699
봉형 강류 (Carbon and Alloy Long Products)	EU	25.5%	721310 , 721320, 721391, 721399, 721410, 721420, 721430, 721491, 721499, 721510, 721550, 721590, 721610, 721621, 721622, 721631, 721632, 721633, 721640, 721650, 721699, 721710, 721720, 721730, 721790, 722520 , 722620, 722710, 722720, 722790, 722810, 722820, 722830, 722840, 722850, 722860, 722870, 722880, 722910 , 722920, 722990, 730110, 730210, 730240, 730290

품목	1위 수입국	대세계 수입(%)	HS 코드
파이프·튜브 (Carbon and Alloy Pipe and Tube Products)	한국	20.2%	730410 , 730419, 730421 , 730423, 730429, 730431, 730439, 730451, 730459, 730490, 730511, 730512 , 730519, 730520, 730531, 730539, 730590, 730610 , 730619, 730620 , 730629, 730630, 730650, 730660 , 730661, 730669, 730690
반제품 (Carbon and Alloy Semi-finished Products)	브라질	49.8%	720610, 720690, 720711, 720712, 720719, 720720, 722410, 722490
스테인레스 (Stainless Products)	EU	43.7%	721810, 721891, 721899, 721911, 721912, 721913, 721914, 721921, 721922, 721923, 721924,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1, 722012, 722020, 722090, 722100, 722211, 722219, 722220, 722230, 722240, 722300, 730411, 730422, 730424, 730441 , 730449 , 730611 , 730621 , 730640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철강(제72류, 제73류) 총 수입금액(37.9억 달러)의 약 63.0%에 대해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를 진행 중임

구분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종류	관세율	
조사중	대형구경강관	반덤핑	-	2018.01.17
		상계관세	-	2018.01.17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5.1~48%	2017.05.09
	탄소합금강선재	반덤핑	40.8%	2017.04.17

구분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종류	관세율	
규제중	탄소합금후판	반덤핑	7.1%	2016.04.28
		상계관세	4.31%	2016.04.28
	페로바나듐	반덤핑	3.22~54.69%	2016.04.19
	인동	반덤핑	8.43%	2016.03.30
	열연강판	반덤핑	3.89~9.49%	2015.09.01
		상계관세	3.89~58.68%	2015.09.01
	냉간압연강판	반덤핑	6.32~34.33%	2015.08.17
		상계관세	3.89~59.72%	2015.08.17
	강벽사각파이프	반덤핑	2.34~3.82%	2015.07.21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반덤핑	8.75~47.80%	2015.06.23
		상계관세	0.72~1.19%	2015.06.23
	송유관	반덤핑	2.3~19.42%	2014.11.05
	강철 못	반덤핑	0~2.76%	2014.06.19
	무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6.88%	2013.10.22
	유정용 강관	반덤핑	6.66~46.37%	2013.07.10
	연벽사각파이프	반덤핑	15.79~30.66%	2007.07.18
	PC 강선	반덤핑	35.64~54.19%	2003.02.27
	철강 후판	반덤핑	1.84~2.05%	1999.03.16
		상계관세	1.39%	1999.03.16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	반덤핑	19.60~58.79%	1998.06.30
상계관세		0.54~4.64%	1998.06.30	
스테인레스 선재	반덤핑	5.77~28.44%	1997.08.26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반덤핑	2.67~7.92%	1991.11.01	
스탠다드 강관	반덤핑	8.18~38.16%	1991.10.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미국 통상정책 전망

●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 공화당의 성격이 높은 지역이 민주당으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관세제외를 요청하는 일리노이(IL)주, 텍사스(TX)주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거둠
- 現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와 일자리 창출 등은 노조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음
- 대통령 재량권이 높은 통상규제인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는 한편, 전통적 민주당의 성향이 강한 조치로, 앞으로의 중국, 한국을 포함한 대세계로의 조치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통상법 제232조는 완화되기보다 규제 대상 품목이 자동차, 조선, 전자기기, 반도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 ❖ 민주당도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를 찬성하고 있어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민주당의 협력이 불가피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양국의 입장

●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

- (미국)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조치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가능성
 - ❖ USTR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대표 등은 자유주의무역원칙과 WTO가 무너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경제와의 비동조화(decoupling)가 미국경제에 유익할 것으로 보고 있음
 - ❖ 또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중 미국경제의 안보(Security)와 관련된 분야는 중국으로부터 이탈시켜 미국내 투자로 전환시키고자 함

- (중국) 대미국 무역흑자의 60%는 다국적기업이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을 거쳐서 수출하고 있음
 - ❖ 글로벌SCM 구조자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어, 한국과 중국기업은 더 이상 상생관계가 아닌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
 - ❖ 미국 측의 반덤핑 제재는 중국기업을 내부적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수입자 및 소비자에게는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됨

■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 2018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 개정 협정문이 통과되지 못했으나,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관세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및 덤핑·상계 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협의
-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함. 특히, 미국 측은 통상 1년 2개월~최장 6년까지 소요되었던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절차³³⁾를 신속히 진행하고, 공급부족 판정 시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을 변경하기로 합의

(현재 한-미 FTA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

섬유·원사(yarn)부터 역내산 사용, 역내생산 시 원산지가 인정(원사기준)되나, 일부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 연간 제작사별 50,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기존 25,000대)하기로 하였으며, 우리정부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해석을 요청할 경우 기존 미국정부의 ‘회신의무’를 ‘신속한 회신의무(without undue delay)’로 개정 합의

33) 역내 공급부족 여부 입증을 위한 미국 내 절차로는 Public Comment,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 의회 검토 등이 있음

- 미국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1월 1일 철폐)에서 추가 20년(2041년 1월 1일 철폐) 연장(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

(대상 HS코드)

87042100(디젤/5톤 이하), 87042250(디젤/5-20톤), 87042300(디젤/20톤 초과), 87043100(가솔린/5톤 이하), 87043200(가솔린/5톤 초과), 87049000(기타)

- 현재 개정 검토 중인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³⁴⁾ 개정(안)을 2018년 말까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함. 우선 2018년 10월말까지 개정초안을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연기된 상태임
-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한-미 FTA 통관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함

■ NAFTA 재협상 내용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 대한 무관세(duty-free) 원칙과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금지하고 특정 세관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 역시 기존 NAFTA 협정 수준을 유지함
-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 요건 강화] NAFTA 재협상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어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 요건이 75%로 상향됨
 - 한-미 FTA와 CPTPP에는 자동차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함유 비율 요건이 각각 35%와 45%이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할 수 있음
 - 한-미 FTA에서 자동차(HS코드 제8701호~제8705호)는 역내부가가치 35% 이상, 자동차 부품(HS코드 제8708호)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해야 함

34) '글로벌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 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의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하여 주는 제도임

- CPTPP에서 자동차(HS코드 제8701호~제8705호)는 역내부가가치 45%, 자동차 부품(HS코드 제8708호)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부가가치 35~45%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최저임금 요건 추가] 자동차 구성품의 40~45%는 시간당 임금이 최소 16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됨

- 한-미 FTA와 CPTPP 원산지 규정에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저임금 관련 요건이 없음

■ 미국 GSP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2020년까지 재실시

●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³⁵⁾ 연장 관련 조항을 포함한 ‘2018 일괄세출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8)’에 서명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소급적용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GSP 특혜 대상국이 아니지만, 우리기업이 해당 국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혜택을 보게 됨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조건

- 제품이 반드시 지정된 국가(BDC: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직접 수입되어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BDC의 GSP 해당 품목이어야 함
- 제품이 BDC에서 성장, 생산,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35) GSP 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에 해당되는 특정 수혜국에게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12월 31일 만료된 바 있음

● HS코드별 GSP 적용여부 확인 방법

-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무역위원회 웹사이트(<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에서 HS 코드를 검색한 후, Column1 아래 Special 항목에 A, A+, A*의 표기를 참고

HTSUS Subheading	Article description	Rate of Duty(%)		
		Column 1		Column 2
		General	special	
8406.10.10	Steam turbines for marine propulsion	6.70%	Free(A, ...)	20%
8413.30.10	Fuel-injection pumps for compression-ignition engines	2.50%	Free(A*, ...)	35%
8708.92.50	Mufflers and exhaust pipes, not for trackers	2.50%	Free(A+, ...)	25%

- A는 모든 BDC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의미
 - A+는 LDBDC(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수입된 GSP 혜택 제품만이 해당
 - A*는 해당 상품에 대해 하나 이상의 BDC 리스트 국가가 GSP 혜택에서 제외 되었음을 의미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주로 저개발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산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투자한 여러 국가들이 해당되므로 GSP 프로그램 BDC와 해당 상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메가FTA인 CPTPP 출범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가입 가능성

-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됨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비준이 완료됨
 -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는 비준이 의회 계류 중임
- 미국이 참여했을 때 TPP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으나 지금은 12.9%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 다만 영국과 태국이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도 추가적으로 가입 여부를 논의중(회원국의 동의 필요)

제2절 최근 품목별 주요 수출입 이슈

■ 미국 식약청(FDA), 한국 제약(화장품)

- 2017년 이후 미국 FDA의 제약(화장품) 업체의 제조시설 검증 강화
 - 미국 FDA는 FD&C Act(미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의거해 상대국 생산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미국 수입을 금지함
 - ❖ 그 기준은 ‘오염’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제품임
 - ❖ FDA는 2년마다 제조업체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데 특히 미국내 판매가 급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 현장 검증 후 경고장을 발송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짐
 - 최근 미국 FDA의 한국 제약(화장품) 기업에 대한 경고장(Warning Letter) 발송건수가 급증함
 - ❖ 지난 6년간 FDA가 발송한 경고장은 2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들어 6건으로 증가함
 - ❖ 미국 내 K 뷰티제품의 인기 증가 및 아시아 국가에서의 화장품 수입 증가에 따른 미국 식약청의 감시 증가

- FDA의 현장 검증 시 제조시설, 장비, 원자재의 위생 및 청결 여부, 라벨링의 내용, 기록보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함
 - ❖ 제조시설의 경우 바닥 배수 및 하수도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장비가 청소 및 소독이 잘되었는지, 원자재의 용기가 폐쇄 또는 포장되거나 상자에 담겨 바닥에 떨어져 보관되는지 등을 살펴봄
 - ❖ 디스플레이패널(Principal Display Panel)에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안정성 확인여부 (예 : “경고-이 제품의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음” 등)를 표기해야 함
 - ❖ 정보패널(Information panel)에 제조사 이름, 주소, 성분, 사용법을 표기해야함
 - ❖ 생산공정, 샘플링, 테스트 등 제품 관련 기록보관이 필수적임
- 또한 우리기업은 FDA의 제품 판단기준인 ‘오염’ 또는 ‘잘못 표기’ 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 레이블링 시 인정받지 않은 치료 효과의 주장 및 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유의해야함

기 준	내 용
'오염(adulterated)'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 또는 내용물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됨 • 오물이 포함됨 • 미허용 또는 미확인된 색소가 첨가됨 • 불결한 조건에서 생산 또는 보관된 제품
'잘못 표기(misbranded)'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가 가독성 있게 표시되지 않음 •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기 표기 •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표기

■ 미국 USTR, 태양광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중지

● 2018년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8개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면제

- 2018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201조에 근거해 전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태양광 모듈 및 셀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개시함
 - ❖ 태양광 제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한 부과 조치
 - ❖ 모듈 규제사항은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셀의 경우 2.5GW 초과 물량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었음
- 미 무역대표부는 2018년 9월 19일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면제 신청을 승인함

- ① 455W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mm를 초과하지 않으며 너비는 100~255mm 이하, 표면적은 2,500cm² 이하이며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 ② 길이가 70~235mm 이하, 표면적이 539cm²를 초과하지 않으며 16V를 초과하지 않는 4W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단, 이런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 ③ 60W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 482mm 이하, 너비 635mm 이하, 총 표면적 3,061cm² 이하인 제품
- ④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유연 오프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120W인 제품
- ⑤ 흑색 또는 청색 이외 다른 색상의 프레임이 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W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 ⑥ 최대 정격 전력이 3.4~6.7W 사이인 셀 중 표면적이 154~260cm² 사이이고 셀 앞면에 버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보다 두꺼운 제품
- ⑦ 길이가 1,556~2,070mm 사이, 너비가 1,014~1,075mm 사이이고 셀이 설치된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500W 사이인 패널 중 주석 코팅된 깎지 낀 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 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mm보다 큰 제품
- ⑧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로만 구성된 제품

- 한국기업은 미국시장에서 조립형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 이번 승인 조건에 맞춰 대미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 2017년 기준 한국산 조립형 태양광 제품(셀, 모듈, 패널)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 비조립형은 7위를 기록함
 - ❖ 해당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조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에서 제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자국 내 태양광 산업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른 것임
 - ❖ 현재 모든 품목 면제 신청서가 검토된 것이 아니기에 추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면제가 예상됨

■ 유아용 슬링캐리어 안전기준 발표

● 2018년 2월, 유아용 슬링캐리어 안전기준(Safety Standard for Sling Carriers) 발표

- CPSIA section 104에 근거해 CPSC는 영아 및 유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해당 기준은 보통 자율 준수 기준이나, CPSC에서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 시 자율 준수보다 수준이 높은 의무적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발표한 안전기준은 유아용 슬링캐리어에 대한 자발적 표준 ASTM F2907의 의무적 준수를 요구함(2018년 1월부터 발효)
 - ❖ ‘슬링캐리어’는 35파운드 이하의 무게를 가진 유아가 보호자의 상체에 기대어 바로 서거나 비스듬한 자세로 유아를 안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직물 제품 또는 직물 구조물
 - ❖ 모든 유아용 슬링캐리어는 반드시 경고 라벨을 영구적으로 부착하고 유아를 태우는 적절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림 등 사용법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 경고 라벨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 슬링캐리어와 안전장치에 의한 질식 위험
 - ② 유아가 슬링캐리어에서 떨어질 위험
 - ③ 보호자가 버클, 스냅, 고리 등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알림
- 유아용 슬링캐리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품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
 - ① 제조업체의 최대 권장 중량의 3배까지 운반 가능해야 함
 - ② 이음새 분리, 직물의 찢어짐,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구성 향상
 - ③ 정상적인 사용 중 유아가 슬링캐리어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
- 이외에 세탁, 날선 부분과 모서리, 작은 부품, 페인트의 납 성분, 개폐 장치, 끼임, 발화성 등에 관해 기술 규정 준수를 요구

● 현재 미국에 유아용 슬링캐리어를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제조업체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생산해야 함

- ❖ 글로벌 유아용 슬링캐리어 시장은 부모들의 수요 증가로 최근 성장을 지속하는 시장임 (2018~2020년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3.68% 성장 전망)
- ❖ 현재 한국산 유아용 슬링캐리어의 대미수출규모는 작지만 한국의 포대기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고 있어 전망이 밝은 편임

제Ⅳ장

미국 전자상거래 (E-Commerce, EC)

- 제1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제2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제3절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 제4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제1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미국 EC시장 현황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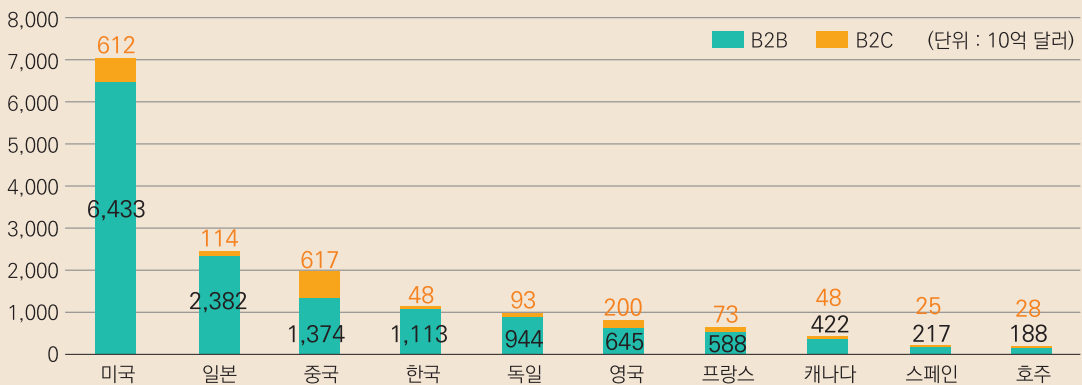
● 2015년 세계 EC시장 규모(B2B 및 B2C합계)는 25조 2,930억원

- UNCTAD에 따르면 2015년 세계 EC시장 규모(B2B 및 B2C합계)는 25조 2,930억원 달러에 달함
- 그 중 B2B시장규모는 22조 3,890억 달러로 약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B2C는 2조 9,04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EC시장 규모는 약 7조 550억 달러로 세계 1위임

- 그 다음은 일본(2조 4,950억달러), 중국(1조 9,910억달러), 한국(1조 1,610억 달러)으로 아시아 지역의 EC시장 규모 비중이 큰 편임
- B2B시장 규모는 미국이 6조 4,430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크며, 일본, 중국, 한국이 그 뒤를 이음
- 한편, B2C의 경우 미국이 6,120억 달러, 다음은 중국이 6,17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EC시장 규모(2015년,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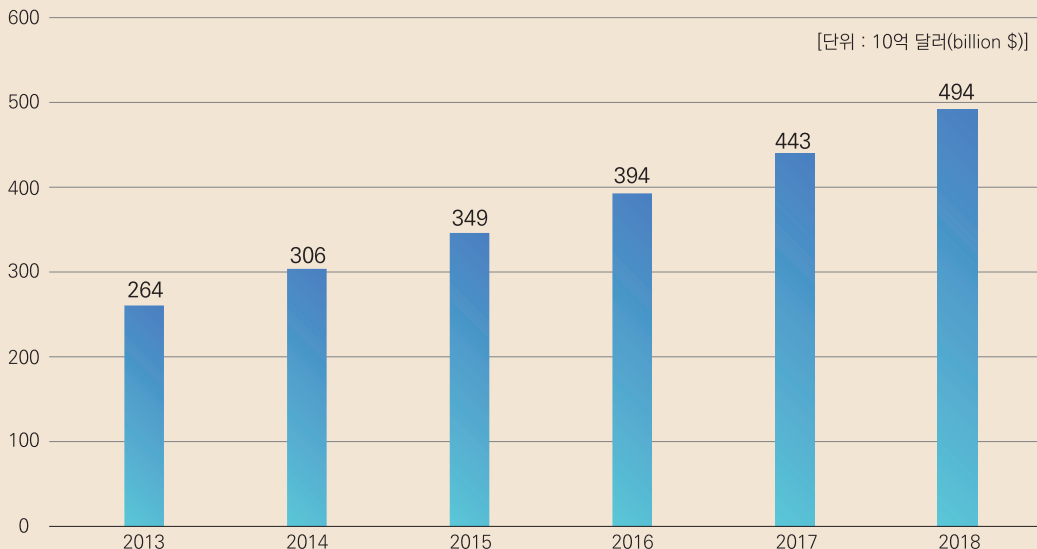


자료 : UNCTAD

● EC시장은 거래형태에 따라 B2B, B2C, C2C, CBEC*로 나뉨

-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거래 또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정부기관과 기업 간에 EC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칭함
 - ❖ 예를 들어 항공회사가 엔진부품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거래가 B2B에 해당함
- B2C(Business to Consumer) : 온라인상에서 기업과 개인소비자 간에 물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 예를 들어,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 개인소비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Sportify의 음악서비스가 이에 해당함
- C2C(Customer to Customer) : 인터넷 옥션 및 플리마켓 등 개인소비자 간의 온라인 거래를 말함
 - ❖ 예를 들어 eBay, Esty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숙박서비스(Airbnb)와 같은 거래를 말함
- CBEC(Cross Border E-Commerce) :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거래를 통틀어 말하며, B2B, B2C, C2C 등 모든 종류의 국경을 초월한 판매자와 구매자에 따른 거래가 이에 해당함

〈미국 EC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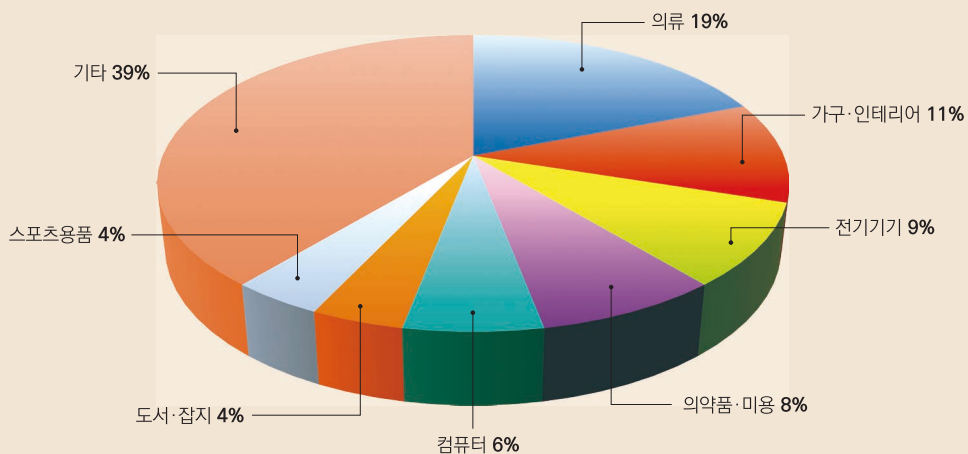


● 미국 EC시장은 의류, 가구 및 인테리어, 전기기기 산업의 비중이 높음

- Digital Commerce360(2017) 조사에 따르면³⁶⁾, Amazon의 의류 판매액은 163억 달러를 상회함
 - ❖ 다음으로 macy's(약60억달러), Nordstorm(약 30억 달러), GAP(약 20억 달러)으로 나타남
- 미국 소비자들은 가구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편이며, Statista에 따르면 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이 EC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에는 11.4%였지만 2022년에는 1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EC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가구 및 인테리어의 브랜드는 Wayfair, Amazon임
 - ❖ Wayfair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0억 달러, Amazon은 30억 달러 정도임
 - ❖ 온라인 판매 최대기업인 Amazon은 2017년 가구시장에 진출한 이래 현재까지 가구품목 매출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가전산업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오프라인 점포수가 줄고 매출도 감소하였음. 그러나 EC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 미국 가전산업의 주요 브랜드는 BestBuy, Amazon, Walmart임

자료 : 「Estimated Annual Sales for U.S. Electronic Shopping and Mail-Order House(NAICS45411)」

〈미국 EC시장 규모 산업별 비중〉



3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8896/us-furniture-and-home-furnishings-retail-e-commerce-sales-share/>

● EC 판매 상위 기업

- 미국 EC시장에서 Amazon은 다양한 품목부문을 아울러 매출액 1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C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미국의 EC시장을 이끈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으며, 이중 8개 기업은 실제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한 기업임. 또한 이중 5개 기업은 전년대비 10% 이상의 EC 성장률을 기록함

〈미국 EC매출액 상위 10위〉

순위	기업명	매출액(백만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EC판매액비율(%)
1	아마존(Amazon)	94,665	19.4	69.6
2	애플(Apple)	16,800	40.0	7.7
3	월마트(Walmart)	14,430	8.9	3.0
4	메이시스(Macy's)	4,622	12.5	17.9
5	코스트코(Costco)	4,227	11.4	3.5
6	QVC	4,047	5.1	46.6
7	노드스톰(Nordstrom)	3,219	13.7	21.8
8	타겟(Target)	2,870	13.9	15.4
9	Kohls	2,870	13.9	15.4
10	갭(GAP)	2,531	0.0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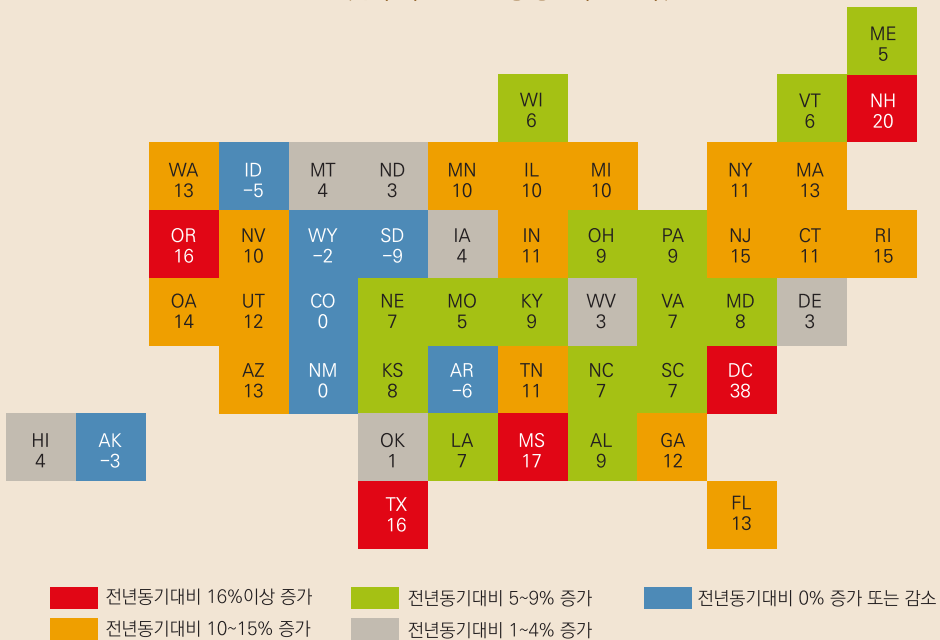
자료 : 「Estimated Annual Sales for U.S. Electronic Shopping and Mail-Order House(NAICS45411)」

■ 지역별·주(州)별 시장동향

● 미국의 동부·서부·남부지역 주(州)별 온라인 구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 2016년 3월 ~ 2017년 2월의 주(州)별 온라인 구매액은 동서연안주의 뉴햄프셔주(전년동기대비 20% 증가), 오레곤주(16%), 로드아일랜드주(15%), 뉴저지주(15%), 캘리포니아주(14%) 등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워싱턴DC는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한 기록을 보였으며, 미시시피주(17%), 텍사스주(16%) 등 남부·남서부 주(州)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임
- 그 외 사우스다코타주(전년동기대비 9% 감소), 알칸사스주(6%), 아이다호주(5%), 알래스카주(3%), 와이오밍주(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州)별 EC 성장률(2017)〉



자료 : Washington Post, "No, the rest of America is not online shopping like you are", 2017.

■ B2C 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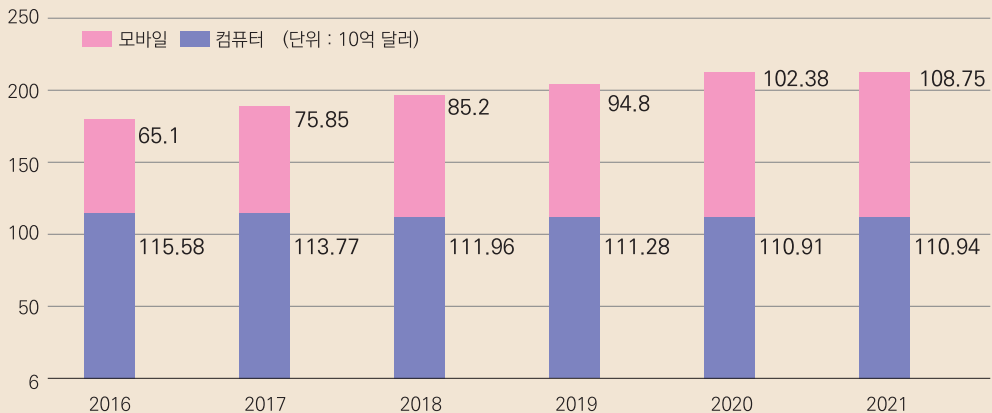
● 2017년 미국의 전체 EC 매출액은 전체소매시장 매출액의 10%정도 금액인 약 4,600억 달러를 기록

- 소비자신뢰지수³⁷⁾(consumer confidence index)는 2000년 이후 최고인 125.9를 기록하였으며, 식품, 생필품, 잡화 이외 식품, 가구산업 부문에 대한 소비도 증가함
- 서비스부문에서 EC거래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부문은 여행관련 산업임
 - ❖ 미국 EC시장의 대표적인 여행산업 플랫폼은 Priceline과 Expedia가 대표적임
 - ❖ 2016년 매출액은 Priceline이 업계 1위로 100억달러, 업계 2위인 Expedia는 80억달러를 기록함
 - ❖ 최근 여행산업의 주요 소비자들 성향은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티켓예약 및 티켓구매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EC 전체소매시장을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EC기업은 Amazon임

- Internet Retailer Top 500(2017)에 따르면, 2016년 EC 전체소매시장은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지만, 아마존의 매출액을 제외한 성장률은 11.7%정도로, Amazon 오직 한개 기업이 미국 소매시장의 약 4% 성장률에 공헌함
 - ❖ 2016년 Amazon의 매출액은, EC 전체소매시장의 38%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5.5% 증가한 43.5%를 기록하였음

〈컴퓨터·모바일별 여행부문 매출액 추이(2016~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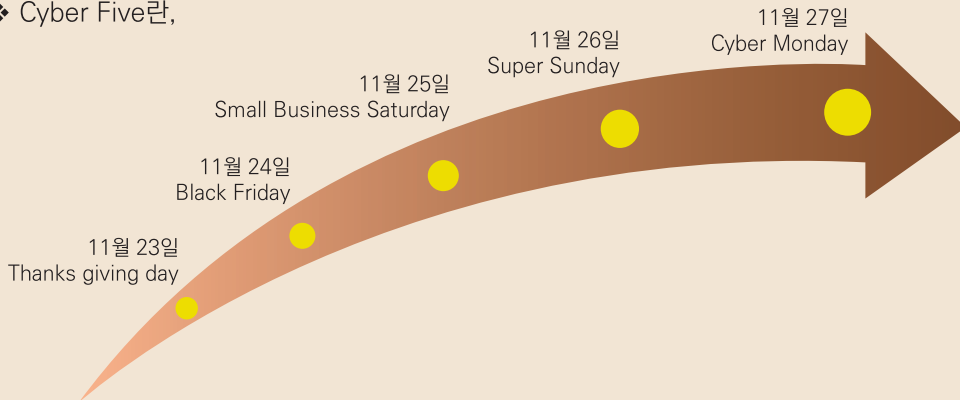
37) 소비자신뢰지수는 1985년을 기준연도(=100)로 상정함

■ 미국 소비자의 EC이용 현황

● EC 구매율이 집중되는 2017년 “Cyber Five”이 구매통계에 따르면,

-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의 구매율이 높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Cyber Five란,



● 온라인쇼핑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에 주로 사용되는 매체로는,

- 실제 구입에 사용된 수단은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스마트 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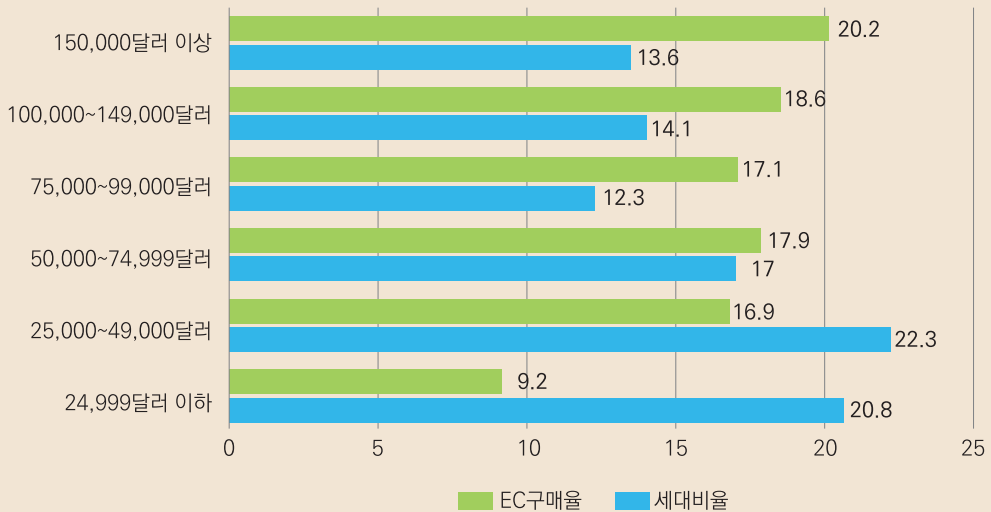
● EC 소비자 온라인 행동경향을 살펴보면,

- 2017년에는 미국 전체 국민의 79%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22%가 성장한 수치임
 - ❖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 79% 중 15%는 Facebook과 Twitter등의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함
 - ❖ 또한, SNS가 온라인쇼핑을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 역할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2017년 SNS상에 게재된 소매업 중에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호의적인 댓글을 많이 받은 기업순위는 다음과 같음

순위	상호명	순위	상호명	순위	상호명	순위	상호명	순위	상호명
1위	Amazon	3위	Apple	5위	Etsy	7위	Nike	9위	Gucci
2위	eBay	4위	Disney	6위	Zara	8위	BestBuy	10위	Target

● **연간 세대별 수입과 온라인 구매의 상관성**

- 연간 수입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미국 전체의 14%)은 EC시장에서의 구매비중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임
- ❖ 그 외 2만 4,999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EC구매율이 9.2%이며 이외 중간소득층은 16~20% 수준의 구매율을 보임



자료 : statista, BI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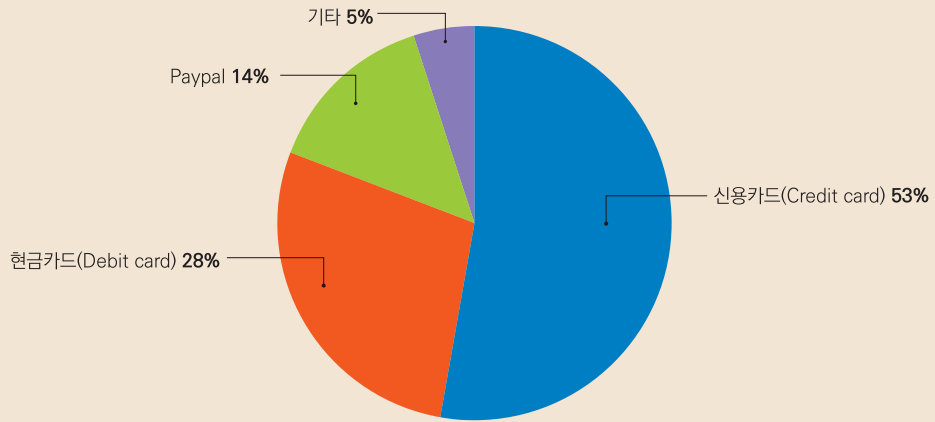
● **EC 매출액 1순위인 Amazon은,**

- 저소득층의 EC구매율이 낮은 관련성에 착안하여 저가(低價)서비스를 도입함
- 고소득층을 위한 프라임회원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배송 서비스는 다양한 소득층의 회원을 사로잡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현재 해당 서비스들을 시행중임
- ❖ 2017년 저소득층을 위한 1개월 등록비용이 5.99달러로 저렴한 아마존 프라임할인 판매를 개시함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EC결제수단은 신용카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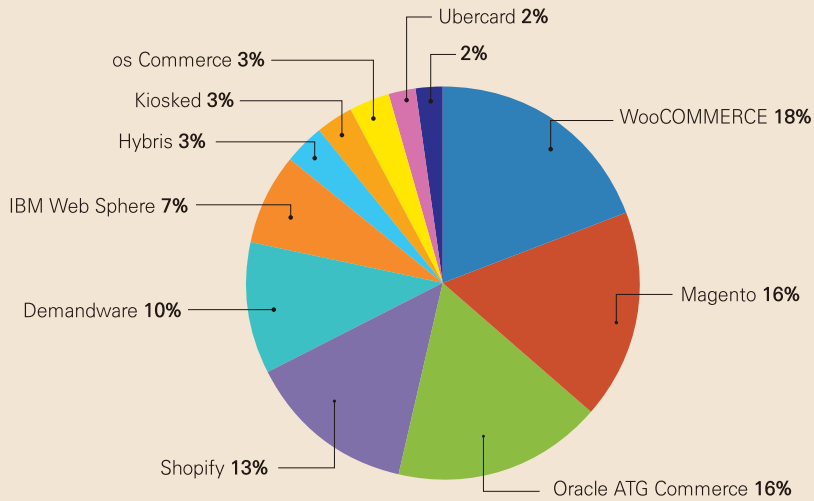
-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보안(security) 측면에서 신용카드 결제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음
- ❖ 2017년 신용카드 온라인 이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Credit card (53%), Paypal(14%), 기타(Amazon card, american express 등) (5%)의 결과를 나타냄

〈소비자가 선호하는 결제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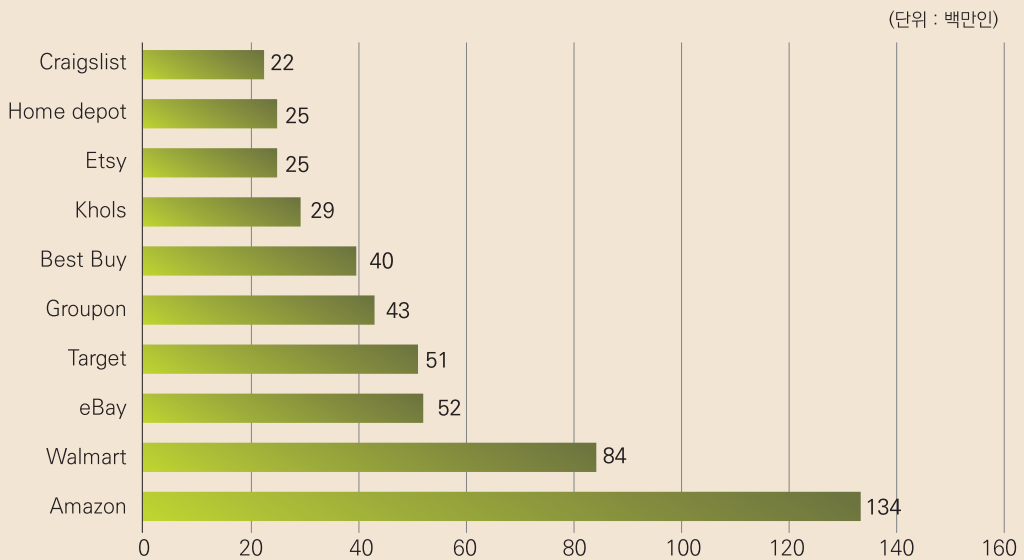
- EC의 디지털결제인 Paypal 이용률은 2020년에는 신용카드 사용률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
 - ❖ 전자결제서비스(Digital payment)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신흥국에서 Paypal을 통한 EC거래 증가가 원인이라 볼 수 있음
- EC플랫폼은 WooCommerce, Magento, Oracle ATG Commerce, Shopify가 점령
 - ❖ EC플랫폼이란 EC기업이 EC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웹을 온라인상에서 판매·운영·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임

〈EC플랫폼 시장점유율(2017년)〉



- EC점포전용 어플리케이션(앱)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 ❖ Amazon이 1억3,400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위는 Walmart로 8,200만 명으로 나타남
 - ❖ 주요 기능으로는 소비자가 모바일로 상품을 검색하여, 다음날 검색한 상품이 입고되어 재고가 있음을 알려주는 앱을 통해 알람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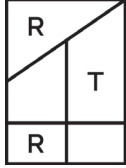

〈1개월간 소매부문 앱 사용수(2017년)〉



■ 거래형태별 주요 EC 선점 기업 소개

● B2C 시장 선점 기업


	<p>Amazon(아마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식품, 생필품, 잡화,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 취급물품 4억 종 이상) • URL : https://www.amazon.com/
	<p>Wayfair(웨이페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가구 및 인테리어 소품 • URL : https://www.wayfair.com/

	<p>Rent The Way(렌트더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여성복·액세서리(주얼리) 렌탈 서비스 제공 • URL : https://www.renttherunway.com/
	<p>1-800-Flowers.com In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꽃, 식물, 선물세트, 식품선물세트, 과자선물세트 등 답례품 • URL : https://www.1800flowers.com/

● C2C 시장 선점 기업

	<p>Uber(우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라이드셰어링(Ride Sharing) 서비스 • URL : https://www.uber.com/
	<p>eBay(이베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 생필품, 잡화, 전자제품 등 • URL : https://www.ebay.com/
	<p>Lemonade(레모네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보험서비스 • URL : https://www.lemonade.com/
	<p>Thumbtack(썸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지역전문가(청소, 개인트레이너 등) 중개서비스 • URL : https://www.thumbtack.com/

● CBEC 시장 선점 기업

	<p>Grab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해외의 물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그 국가로의 여행자 및 출장자를 매칭해주는 CBEC 마켓플레이스 제공, 아마존·이베이에서 해외 배송하지 않는 경우 대리판매 • URL : https://www.grabr.io/
---	--

 <p>azoya Your Bridge to China Retail</p>	<p>azoy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CBEC의 B2C, B2B시장 운영 플랫폼 제공 • URL : https://www.azoyagroup.com/
 <p>Yakit</p>	<p>Yak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EC소비자의 해외배송에 따른 상품 이외 관세 등의 비용을 명확히 하며 CBEC의 국제 배송 서비스 플랫폼 제공 • URL : https://www.yakit.com/
 <p>shopify</p>	<p>Shopif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해외쇼핑몰 구축 솔루션 제공(재고관리, 판촉, 결제, 물류관리 고객관리 기능) • URL : https://www.shopify.com/

● B2B 시장 선점 기업

 <p>amazon</p>	<p>Amazon Busi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아마존의 B2B 서비스 (2017년 기준 100만개 기업고객 초과) • URL : https://www.amazon.com/b2b/
 <p>CISCO</p>	<p>CIS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서비스 :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URL : https://www.cisco.com/

제2절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대미국 EC시장 진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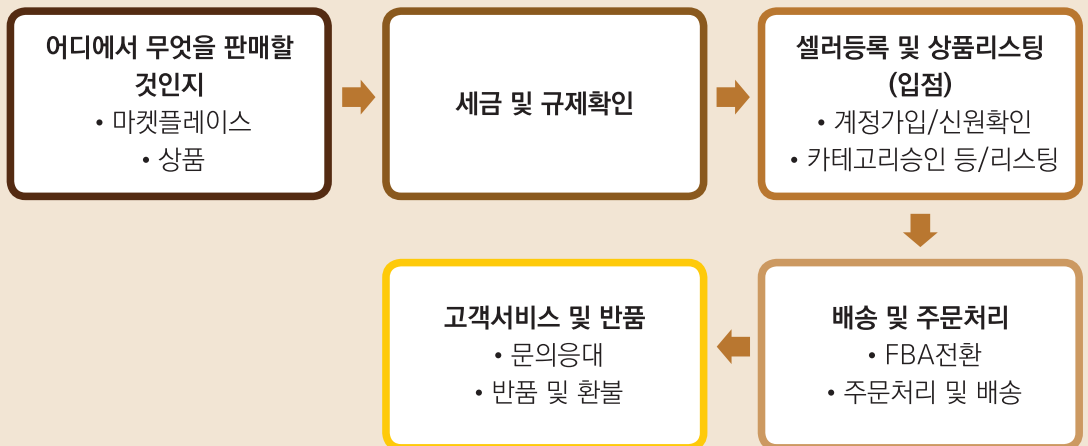
- 대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의 진출방법은 “한국에 기반을 둔 초국경전자상거래 (CBEC)모델” 또는 “미국에 기반을 둔 현지 EC모델”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

- EC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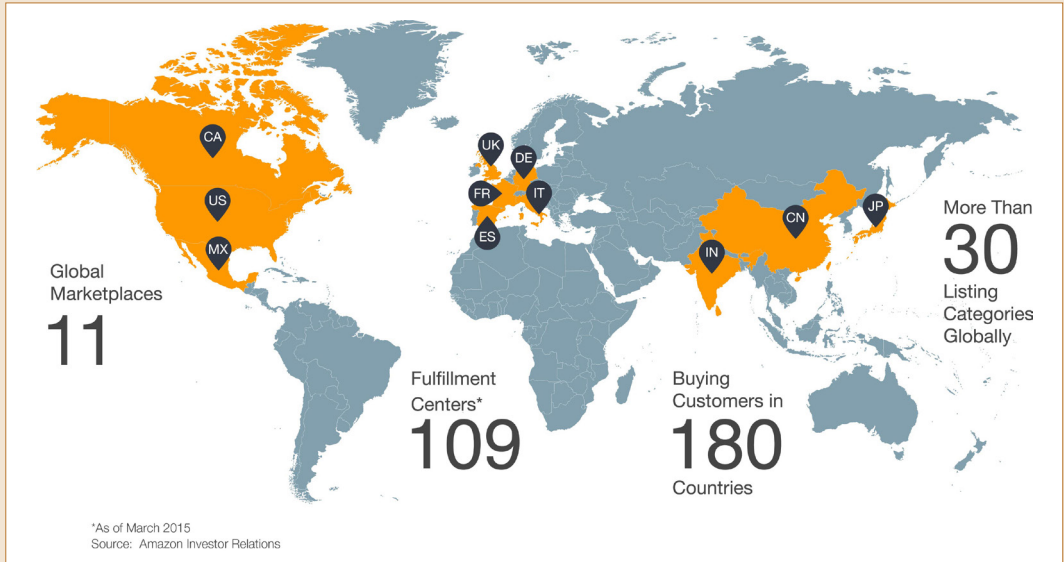
① CBEC 웹사이트	미국에 거점을 두지 않고, 한국의 인프라만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사의 웹사이트를 전개하는 방식
② 현지사이트	창고, 결제 등 EC 물류흐름에 필요한 업무를 미국 기업에 위탁 및 협업하는 형태로 미국 내에서 소비자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개하는 방식

-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mazon 활용을 추천

- Amazon의 EC거래액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온라인 사용자의 플랫폼별 방문자 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Amazon 입점과 판매를 위한 5가지 절차



❖ 어느 국가에서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기



자료 : Amazon

❖ 세금 및 규제확인

- 미국 비거주 수입자 요구사항 확인
- 관세 및 세율체계 확인
- 세관 : USDA, FDA, CPSC 등의 기관에서는 수입 상품에 따라 허가서, 면허 또는 기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 규제 확인
- 상품규정준수 여부 확인 (미국 수입금지 품목 참조)
- 세금과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셀러등록 및 상품 리스팅(입점)

- (1) Monthly Membership Fee (\$39.99) 고정비율 지불 : 판매유무와 상관없이 월 고정비로 부과금 발생
- (2) Amazon referral fee (제품 판매수수료) : 제품이 실제 판매될 때만 발생하는 카테고리별로 상이한 변동비용
- (3) 부가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 : 선택적으로 FBA, Sponsored Products(키워드 광고) 및 프로모션에 따른 선택적 비용

❖ 배송 및 주문처리

	판매자 직접배송	FBA*(Fulfillment by Amazon)
주문처리	판매자가 직접 고객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국제 배송을 통해 발송	미국 내 아마존 주문처리 센터에 상품을 입고시켜두면 아마존에서 주문처리, 포장, 배송을 대행
고객 서비스	셀러가 직접 고객의 질의에 24시간 이내에 현지 언어로 응대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질의에 24시간 이내에 현지 언어로 응대
반품처리	아마존 반품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미국 내 반송 주소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제배송 비용을 선 지불	아마존이 판매자를 대신하여 반품과정을 관리

* FBA란 아마존에서 지정한 창고에 재고를 가져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이 판매를 해주는 방식임

❖ 고객센터 서비스 및 반품

- 판매자 직접배송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배송과 마찬가지로 반품 및 고객센터 서비스를 직접 대응해야 함. 고객센터지원 및 주문/배송/반품은 아마존 판매자 페이지인 “셀러 센트럴(seller central)” 에서 관리할 수 있음
 아마존은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판매자에게 세가지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값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주문결함비율(Order Defect Rate) : 1% 미만
 - 배송 전 주문 취소비율(Pre-Fulfillment Cancel Rate): 2.5% 미만
 - 배송지연 비율(Late Shipment Rate): 4% 미만
- FBA를 이용할 경우
 아마존이 주문 처리부터 배송뿐만 아니라, 반품, 고객센터까지 판매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 활용을 추천

- 한국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는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제3절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미국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 EC관련법은 미국연방 전체 혹은 주(州) 단위에 해당하는 법으로 구분

- 미국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는 미국의 공정한 상거래를 감독
 - ❖ (목적) 불공정한 경쟁 및 상업행위, 소비자를 유해하는 행위를 감독하며,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설정, 사업자 조사, 미국의회 및 시민에 권고
 - ❖ (범위) 미국 내 거래, 미국으로 유입되는 CBEC거래에도 적용
 - ❖ (관할) 소비자보호국(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 ❖ (법령) 연방거래위원회 소관법령 73

관련법	내용
연방거래위원회법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 연방거래위원회의 기본법령임 (1) 불공정 경쟁 및 상업상의 불공정, 또는 사기행위 방지 (2) 소비자에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적 구제 (3) 불공정 경쟁 및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 설정 (4) 상거래에 관련된 기업·관행·관리 조사 및 정보수집 (5) 미국의회, 국민에게 보고하는 입법보고 의무
소비자평가공정법 (Consumer Review Fairness Act)	- 소비자가 SNS를 포함하여 공공장소에서 제품을 소개하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법령
1986년 포괄적 담배건강교육법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 담배제조업자, 포장업자, 수입자는 담배가 건강상 위험성이 있다는 사항을 제품 패키지와 광고에 게재할 것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법령에 따라 라디오, TV 그 외의 미디어에서는 담배제품 선전을 금지할 것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 (Dolphin Protection Consumer Information Act)	- 참치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수출자, 도매업자가 돌고래에 해를 가하지 않는 안전한 참치잡이를 하지 않고 획득한 참치에 대해서는 “돌고래 친화적(Dolphin Safe)” 광고를 금지할 것

관련법	내용
연방 담배 라벨링 표시와 광고법 (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품 제조업자, 포장(패키지)제조업자, 수입자는 담배 패키지 및 광고에 담배가 건강상에 해로움이 있음을 표시할 것 <p>〈예시〉</p> <p>SURGEON GENERAL'S WARNING: Smoking Causes Lung Cancer, Heart Disease, Emphysema, And May Complicate Pregnancy.</p> <p>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p> <p>SURGEON GENERAL'S WARNING: Smoking By Pregnant Women May Result in Fetal Injury, Premature Birth, And Low Birth Weight.</p> <p>SURGEON GENERAL'S WARNING: Cigarette Smoke Contains Carbon Monoxide</p>
모피제품 라벨 표시법 (Fur Products Labeling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피제품에는 영어로 모피를 취득한 동물의 이름, 모피가 염색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시할 것
Hobby Protection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모방제품(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하거나 모방지폐 및 동전)과 가품에 대한 규제로 정품이 아닌 지폐에는 반드시 "COPY"를 명시해야하며, 라벨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품으로 인정됨
란함-상표법 (Lanham Trade-Mark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C는 상황에 따라 등록상표 삭제를 위해 특허상표국에 요청할 수 있음
1994년 중범죄방지·집행법 메이드인 아메리카 규정 (Made in USA Provisions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in America/Made in USA를 표시하는 경우, 그 제품의 모든 또는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것임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Magnuson - Moss Warranty-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모두에 보증을 붙여야한다는 결정은 아니지만, 만약 보증을 붙이는 경우 이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야함
구매자 신용회복법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일단 결제를 마친 후 그 소비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따른 금전 거래를 금지함 - 만약 소비자가 허가한 경우 제3자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결제 정보를 전달받아야 결제할 수 있음

■ 소비자보호법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연방법의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따라 미국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CPSC)가 발족

- 제품품질안전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리콜 등을 담당, 소비자제품안전을 담당
 - ❖ (범위) 국경 간 전자상거래(CBEC)에 따라 미국 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제품에도 미국 내 제품과 동일한 법이 적용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소비자보호관련법률⁴⁰⁾

관련법	내용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CPSA)	-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및 리콜을 실시하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기초가 되는 법령
소비자제품안전성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CPSIA)	- 소비자제품안전법의 개정법 - 납, 프탈산에스테르에 관한 규정, 장난감 안전성에 관한 규제, 제3자의 시험 및 인증제도, 일반적합증명(General Certificate of Conformity, GCC)429 발행 의무화, 민사 및 형사 처분 적용 등의 내용 포함
어린이 가솔린화상예방법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CGCPA)	- 연료탱크를 아이가 열 수 없는 패키지 의무화
연방유해물질법 (The Federal Hazardous Substance Act/FHSA)	- 가정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에 「위험」을 명시한 라벨 부착 의무화 - 유아에게 위험한 제품(전기로 작동되는 장난감, 침대, 자전거, 어린이용 2층 침대) 등에 부착 규제
어린이안전보호법 (Child Safety Protection Act/CSPA)	- 연방유해물질법의 개정법 - 어린이 목에 걸릴 고체성 물질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 제품에 「위험」을 명시한 라벨 부착 의무화
유해미술재료표시법 (Labeling of Hazardous Art Materials Act/LHAMA)	- 연방유해물질법의 개정법 - 미술용품 중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제품에 「위험」을 명시한 라벨 부착 의무화

40) <https://www.cpsc.gov/Regulations-Laws--Standards/Statutes>

관련법	내용
가연성직물법 (Flammable Fabrics Act/FFA)	- 가연성이 높은 옷이나 실내장식(카펫, 러그, 잠옷, 매트리스 등)을 규정
냉장고안전법 (Refrigerator Safety Act/RSA)	- 실수로 냉장고 내에 사람이 갇힐 때를 대비하여 냉장고 내부에서 열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드라이월 안전법 (Drywall Safety Act of 2012)	-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벽체에 특별 라벨 부착 의무

- 상기에서 소개한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이외에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연방법이 적용됨
 - ❖ 알코올, 담배, 총, 폭발물 → 알코올·담배·화기 및 폭발물 관리국(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
 - ❖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 식품의약품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농산품, 자원 →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 자동차 관련 제품 → 국가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 금융 관련 →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 항공기관 →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출품정보 제공·표시 의무·Cooling-Off Rule

● 2018년 EC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개시를 의무화하지 않음

- 기업명 혹은 판매자 개인의 실명이 아닌, 쇼핑몰 이름만으로 EC상의 거래가 가능함
 - ❖ 미국은 OECD의 회원국으로, 2016년 OECD가 발표한 「E-commerce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함
 - ❖ 판매자정보 제공에 관한 OECD 권고사항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함
 (1) 사업자 등기명 (거래 시 사용하는 이름 혹은 EC쇼핑몰 이름 등)
 (2) 사업자 소재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사무소의 주소)

- (3) 소비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이메일, 전화번호, 그 외 전자연락처 등)
- (4) 웹도메인의 등록정보
- (5) (필요에 따라) 사업자가 소지한 면허
- (6) (필요에 따라 사업자가 업계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업계, 관련 단체의 연락처, 소비자가 그 사업자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 ○○○단체회원기업, 등록번호, 단체연락처)

❖ 그 외 표시사항

- (1) 온라인상에 게시할 사항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웹사이트는 소비자가 어려움 없이 접속할 수 있어야함
 - ✓ 주요기능 설명 ✓ 안전·위생 정보 ✓ 연령제한
 - ✓ 가격 /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옵션 요금 / 배송정보 ✓ 개인보호법
- (2) 1개 국어 이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모든 언어로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금에 관한 정보를 해당국가 통화로 명확히 표시해야함
- (3) 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게시할시, 정보의 용량에 따라 기술적 제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에 정보를 게시해야 함

■ 주(州) 단위 규제

● 연방단위의 법령 및 규제 이외에도 주(州)별 온라인거래에 관한 법이 있음

- (캘리포니아주 규제) California Code, Business and Protection Code-BPC §17538
 -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같은 주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요금을 지불받기 이전에 서면으로 사업자의 반품정책, 사업자의 등기명, 사업자 주소를 알려야함
 - ❖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CalOPPA)를 지켜야함

캘리포니아주규칙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BPC DIVISION8. Special Business Regulations[18400-22948.25] :
 인터넷 상에서 상업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주재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업자는 웹사이트 상에 개인정보관련 규약을 기재해야함

- ❖ (보호대상) 캘리포니아주에 주재하는 소비자로 명시되어있지만, 사업의 운영자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를 불문하고, 인터넷상에서 웹사이트를 소유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함
- ❖ 해당 법령에서 지칭하는 ‘개인정보’란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그 외 개인의 특정한 정보를 뜻함

■ 대미국 EC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미국의 법률 및 규정

●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의해서 규율이 정해지며, 기업의 불공정한 상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을 지킬 권한이 있음

- FTC가 주장하는 「공정한 전자상거래」는 OECD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음

❖ OECD의 전자상거래에서 유의해야할 법률 포인트

① 표시의무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함
② 공정한 마케팅	기업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마케팅, 프로모션, 광고 및 판매를 금지함
③ 데이터를 보호할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 설정을 의무화함

❖ 표시의무와 소비자 관련 데이터 보호를 엄수하기 위해, 기업은 웹사이트 관련 정책인 Terms of Use, Privacy Policy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Terms of Use란 EC웹사이트의 이용규정으로 그 규정을 기초로 소비자와 거래하게 되며, Privacy Policy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되어있음

- EC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마케팅 규제

❖ FTC는 중요한 사실을 생략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인해 실제로 소비자 측에서 손해가 없어도 소비자가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마케팅은 기만적 거래행위로 여겨짐

❖ FTC마케팅 규정에 반할 시에, 광고내용 수정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손해를 보상하고, 벌금도 지불해야하므로 주의해야함

❖ EC 전개 시 확인해야 하는 마케팅 규제 소개

① 가격설정	소비자가 오인할 가격표시는 하지 않음
② 비교광고	자사 또는 경쟁회사 물품의 특징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허위적으로 전달하지 않음
③ 어린이대상 광고	상품 및 그 특징에 대해 어린이대상으로 부정확하게 오해를 살만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

④ 증언광고 (Advertising Testimonials)	광고주와 증언자 간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명확히 개시함
⑤ 이용자 콘텐츠	이용자 콘텐츠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명의 등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할 의무가 있음
⑥ e-메일 마케팅	CAN-SPAM법에 따른, 무차별적 e-메일 전송을 금지함

● FTC규정은 소비자를 불공정한 기업 및 EC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법률로, 국경간 혹은 주(州)간의 EC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국가차원의 규정을 엄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주(州)에서 정한 규정도 함께 엄수해야함

- 각 주(州)에는 FTC규정을 기본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 주(州)별 소비자보호법은 보통 FTC규정을 좀 더 강화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판매할 상품 및 마케팅 내용에 따라서는 FTC규정보다 주(州)법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함
 - ❖ 예를 들어, 뉴욕주는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허위광고 및 불공정한 전자상거래를 금지, 자동차판매 규정 등을 소비자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신차·중고차판매를 할 경우, 그리고 뉴욕주(州)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 뉴욕주(州)의 소비자보호법을 지켜야함
 - ❖ (참고) 미국의 연방제도(Federal System)는 연방법이라 불리는 국가적 차원의 법률 이외에, 각 주(州)별 독립적인 법률 및 수속이 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어떠한 법에 대하여 각 주(州)별로 독자적인 해석 및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만약 다양한 주(州)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사의 상품이 해당 주(州)의 소비자보호 법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함.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음
 - ❖ 비슷한 비즈니스를 전개한 기업의 사이트를 참고함
 - ❖ 캘리포니아주(州) 등 가장 엄격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주(州)의 규정을 참고함
 - ❖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州)를 2, 3개 선택하여 규정을 비교함

제4절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활용방안

■ 미국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 미국의 전자상거래는 미국세관(CBP)이 통관담당을 하고 있으며 수입우편물 및 내국 우편물의 통관은 세관관할 국제우체국(CBP International Mail Branch)과 미국 우체국(US Post Office)에서 관할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를 적용하고 수입 경로에 따라 우편 또는 특송 물품의 통관절차 규정에 따르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법령은 없음

❖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면세기준)

-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이외에 서비스의 종류 및 물품에 따라 행정수수료인 MPF가 부과되나 소액물품에 대해선 면제됨
- 개인용 물품으로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수입자의 선적 건에 대하여 선적지에서의 총 공정소매가격이 USD 200 이하의 물품 등 아래의 경우 관세 및 제반세액이 면제됨
 - 제9804.00호, 제9804.0065호, 제9804.0070호의 물품의 면세적용 비대상자인 미국 거주인의 개인용 또는 가사용 휴대물품으로 USD 200 이하의 물품
- 특송물품, 개인용 및 가사용 물품, 재수입물품, 서적·잡지 등, 정부기관용 물품, 외교용 물품, 재수출 건설자재 등 기타의 USD 200 이하의 물품

-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 수입방법
 - ❖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이 수입되는 방법은 우편(the international postal service), 택배(courier) 및 운송인(freight carrier)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뉨
 - ❖ 국제우편서비스를 통한 수입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물품가격이 USD 2,000은 초과하게 되면, 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분실된 경우 물품추적번호 혹은 보험이 없는 한 되찾기가 어려움
 - ❖ 택배를 이용한 수입은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이 보장되고, 문제가 생겼을 시 추적번호로 추적이 가능함. 많은 인터넷 구매자들이 물품가격에 수입통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하지만, 별도로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 화물운송으로 수입된 경우 구매자가 직접 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이 있음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은 물품 도착 전에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운송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를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 ❖ 모든 특송물품의 수입요건은 세관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되어야하며,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수입번호가 제출되어야함
- ❖ 특송업자 또는 운송인이 수입한 USD 2,000 이하의 우편 또는 화물운송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대부분의 경우 간이신고를 적용하나 예외가 있음
 - 예를 들어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수의 의류의 간이신고적용 한도금액은 USD 250 이하로 함
- ❖ 수입신고인은 허브개시 또는 특송물품 운송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일반수입신고 서식인 CF346을 제출해야하며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고 납세신고서 CF7501을 제출해야 함



• 간소한 통관절차

- ❖ USD 2,000 이하의 상업용 물품, 휴대품 또는 선물용의 비상업용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위해 Informal Entry(약식통관)를 적용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은 화주, 구매자, 또는 수하인, 관세사임
- ❖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반출한 이후에 관세정산이 생략된 1단계의 수입신고 절차라는 점에서 자가 정산으로 간주됨
- ❖ 수입자는 미국세관에 관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 ❖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한 약식 통관)
 - 물품 가치가 USD 2,000 이하인 물품인 경우, 우편물이 수하인에게 배송되는 때에 우편통관서식 (CBP Mail Form)이 수하인에게 제시되고, 우체부에게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 절차 대체
 - 물품 가치가 USD 2,000 초과 물품인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세관이 수하인에게 정식 통관(Formal Entry)을 진행할 것을 통지

• 미국 우편물의 통관유형

구분	대상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수입신고인
약식통관 Informal Entry	개인용, USD 200 이하 (USD 100 이하 선물용품 포함)	B/L 또는 적하목록 리스트	-	화주, 구매자, 수하인 또는 관세사
	USD 200 초과 USD 2,000 이하	CF 3461, CF 7501	송장사본 또는 사전적하목록으로 대체 가능	화주, 구매자 또는 관세사
일반통관 Formal Entry	USD 2,000 초과	CF 3461, CF 7501	수입신고인 자격증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서류 및 수취인증명	수하인 또는 관세사

■ 국내 전자상거래 FTA 수출활용 방법

- 관세청은 2016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식통관절차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 수출신고 항목을 축소하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³⁹⁾를 시행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도입배경

- 일반적인 수출신고제도는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음
- 국민소득 증대 및 내수진작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됨

행정지원

- 수출신고항목을 축소하여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함
- 해외거래처 부호(구매처 부호)는 생략이 가능함
- 관세청 통관포탈을 통해 일괄 등록 기능을 도입함

39) 관세청고시 제2016년 70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FTA 수출활용 방법) 전자상거래를 통한 FTA 수출활용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교부받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생략 가능한 항목을 배제하고 수출신고

구분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가능	신고항목
정식수출신고	전자상거래 수출	○	○	57개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33개
	통관목록(특송화물)	△	×	17개
	통관목록(국제우편)			17개

- (변경사항) 2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2013년에 57개 수출신고 항목이 2015년에는 33개까지 줄어들었고,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해외 배송하는 200만원 이하 물품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출신고와 특송업체 등록이 편리해짐
- (간이수출신고 활용방법)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 함
- (간이수출신고 기준)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판매건별로 수출신고가 되면 환급대상에 대한 환급 절차 이행이 가능
- 또한, 수출실적이 인정되고, 정식통관에 따른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됨. 즉, 특급특송업체 (물류업체) 명의를 아닌 관세사 혹은 수출화주 명의로 직접 신고되어야 함

〈간이수출신고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수출실적으로 인정됨 • 주문취소 등에 따른 반품 제품의 재수입 시 관세 면제받기 용이함 • 환급대상 화물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식 통관절차로 인해 수출 이행보고를 해야 함

